

국가인권위원회 15주년 기념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 및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일 시 : 2016. 4. 26.(화) 14:00~16:00
장 소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
주 제 :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마련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이 토론회의 주제를 보고 다소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광이라니.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조금만 귀를 기울여보시면 금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장애인에게 관광의 가치는 여가를 즐기는 차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보편적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사회의 평등성을 공유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주지역은 유네스코 3관광에 빛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이며 2007년 관광객 500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3년도에는 그 2배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관광환경 및 인프라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장 불편한 지역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등에서 관련 조례를 만드는 등 모두가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기본적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과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역시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관광 역시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의 한 부분임을 지역사회에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26.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고 현 수**

- 일 시 : 2016. 4. 26.(화) 14:00~16:00
- 장 소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 주 제 :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마련

구 분	일 정
13:30 ~ 14:00	❖ 등록 및 접수 사회 :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와 장애정책팀장
14:00 ~ 14:20	❖ 개회식 ❖ 축 사: 고희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본 행사	좌장 : 김동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4:20 ~ 14:50 (30분)	❖ 발제: 장애인 접근가능한 여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의 과제 윤삼호 (장애지식정보넷협동조합 정책실장)
14:50 ~ 15:20 (30분)	❖ 토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장애인관광지원정책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2. 제주지역 관광관련조례와 UNWTO의 접근가능한 관광지침 적용여부 및 정책제안 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3. 접근 가능한 제주관광 장애물 없애기 송창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팀장)
15:20 ~ 15:40 (20분)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청중 및 참여자 토론 (진행: 좌장)
15:40 ~ 16:00 (20분)	❖ 폐회

◆ 발제문

- 장애인 접근가능한 여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의 과제 1
윤삼호 (장애지식정보넷협동조합 정책실장)

◆ 토론문

-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장애인관광지원정책 23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 제주지역 관광관련조례와 UNWTO의 접근가능한 관광지침 적용여부 및 정책제안 .. 35
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접근 가능한 제주관광 장애물 없애기 45
송창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팀장)

◆ 부록

-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5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07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접근가능한 여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의 과제
- 법과 제도의 측면을 중심으로 -

윤심호

장애지식정보넷협동조합 정책실장



장애인 접근가능한 여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의 과제 - 법과 제도의 측면을 중심으로 -

윤삼호

장애지식정보넷협동조합 정책실장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0년 이후 장애운동의 성장으로 장애인들의 권리가 전 영역에서 크게 신장되었다. 그 결과,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선 장애인들이 이제는 권리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분출하고 있다. 그 중 최근 우리나라 장애인 사회에서 ‘접근가능한 여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접근가능한 여행(accessible tourism)’ 또는 ‘모두를 위한 여행(Tourism for All)’은 “이동성, 시각, 청각, 인지 측면의 결핍으로 여행상품, 서비스, 환경에 접근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평등하게 관광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된 여행상품,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행위”¹⁾이다. 또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물이나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휴가나 여가 시간을 즐기도록 하는 일련의 서비스와 시설(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보, 의사소통 등)의 총체”²⁾라고 할 수도 있다.

접근가능한 여행 대상자의 한 축인 장애인 수는 전 세계적으로 약10억 명(세계 인구의 15%)이고 우리나라는 2,501,112명(전체 인구의 4.9%)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장애인 비율은 43.4%로 9년 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내 인구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

1) Darcy, S., Buhalis, D.(2011). Accessible Tourism: Concepts and Issues. Bristol, UK: Channel View Publication

2) ENAT(2009). UK tourism firms encouraged to improve accessibility. Retrieved 26 December, 2010.

으로 예상된다.³⁾

하지만 장애인의 여행 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장애인 중 해외여행을 원하는 사람은 88.7%인데 최근 3년 동안 해외여행 경험 장애인은 15.7%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국민 해외여행 비율인 49%의 1/3도 안 되는 수준이다. 또 장애인들 대부분은 여행 여건에 대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국내여행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 장애인에게 편리한 여행상품 부재(44.8%), 비싼 여행 비용(30.8%) 등, 그리고 해외여행은 비싼 여행 비용(65.0%)과 장애인에게 편리한 여행상품 부재(54.7%) 등이 불편의 원인이다.(복수응답)⁴⁾

장애인 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국제기구로는 세계관광기구(UNWTO)가 중심으로 되어 장애인을 비롯한 ‘모두를 위한 여행’ 활성화와 장애물 제거에 노력하고 있다. 또 EU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여행(sustainable tourism for everyone)’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노력의 경우,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에서 아직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14년 5월 우리 국회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에 ‘열린 관광지 조성’, 취약계층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시설의 무장애화 추진, 장애인 특성별 관광 도우미 및 문화관광해설사 양상을 포함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전국 6곳 관광지를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를 선정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전망이다.

민간에서의 접근가능한 여행 관련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3년부터 장애인 여행을 위한 토론회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 2015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산장애인인권포럼,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서울과 지방에서 장애인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3) 이봉구(2015). 접근가능한 관광의 현황과 과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토론회 자료집.

4)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15. 4. 20(<http://www.kca.go.kr>)

4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이 글은 접근가능한 여행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장애인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II. 접근가능한 여행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1. UN의 노력

① 장애인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1975년 12월 UN 총회는 ‘장애인권리선언’을 채택한다. 이 선언은 UN이 모든 장애인의 포괄적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UN 규범이다. 1970년대 초부터 미국과 유럽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주장하면서 장애 문제를 국제적 쟁점을 만든 것이 이 선언이 나온 배경이다.

이 선언은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재산, 출생에 기초하여 장애인을 구별하지 않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가맹국에 권고한다. 또 장애인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전한 권리, 일할 권리, 가족과 함께 살 권리, 사회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한다.

② 세계장애인의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UN은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해’로 선포한다. 1970년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장애운동이 정점에 달하자 UN이 장애 문제를 전 세계적 수준의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이 해를 기점으로 UN과 가맹국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개발,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이벤트는 국제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그 해 ‘심신장애자복지법’(오늘날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의 기틀을 잡아나간다.

③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

1982년 12월3일 UN 총회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한다. 이 계획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다시 한 번 선언한다. 이 계획은 장애 예방(disability prevention), 재활, 기회의 평등을 증진하려는 국제 전략이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장애인 참여를 위한 개별 국가의 개발 계획이 포함된다.

또 이 계획은 인권의 관점으로 장애 문제에 접근할 것을 강조하면서, 첫째 장애와 관련된 정의, 원칙, 개념에 대한 분석, 둘째 장애인을 둘러싼 국제적 상황, 셋째 국가별, 지역별, 국제적 수준의 이행 권고를 담고 있다. 이 계획의 성과 중 하나를 꼽자면 국제 사회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90년 미국장애인법(ADA), 1995년 영국 장애차별법(DDA)을 비롯한 각 국가의 장애인 차별금지법들은 이 계획을 규범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06년 UN장애인권리협약 서문은 이 협약이 세계행동계획에 기초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장애인의 여행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조항은 세계행동계획 제134조다. 이 조항은 “UN 가맹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 문화활동, 여행의 기회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식당, 극장, 영화관, 도서관, 리조트, 경기장, 호텔, 해변 같은 레크리에이션(여가) 공간을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가맹국은 이 세계행동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또 레크리에이션 활동 또는 여행과 관련된 당국, 여행사, 호텔, 민간단체 등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여행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등은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공식 정보를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1983~1992년 장애인 10년(Decade of Disabled Persons) 선언

1983년 UN은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다.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시기를 장애인 10년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 기간에 UN은 ‘장애(disability)’를 장애인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관계로 정의한다. 말하자면, 장애 문제의 핵심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라기보다 주변 환경이라며 1970년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주장한 국제 장애인운동의 견해를 국제 사회가 인정한 셈이다.

⑤ 장애인의 기회 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3년 UN은 ‘장애인의 기회 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을 승인한다. 이 규칙에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과 인권 관점에 기초한 행동 지침 22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UN 가맹국의 장애 정책 지침이 될 이 표준 규칙은 ▶ 동등한 참여의 전제 조건 ▶ 동등한 참여 대상 분야 ▶ 이행 조치 ▶ 모니터링 메커니즘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동등한 참여 대상 분야’에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가 포함되어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UN 가맹국은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접근할 수 있고,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고려하여 레크리에이션 활동 또는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세계장애인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년 UN 총회는 ‘세계장애인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다. 1970년대 초부터 국제 장애인동이 염원하던 장애인의 포괄적인 권리 보장과 세계 시민권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실현되는 순간이다.

협약 제정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그 권리와 자유를 장려하고,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내재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국제 사회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증진하고 장애를 빌미로 사람의 권리를 거부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비난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 사회가 인권 관점으로 장애인들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권 목록의 확장이자 지구촌 사회의 진화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그리고 법 아래에서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동등한 법적 보호와 이익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고 기술한 협약 조문에서 이런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제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은 장애인을 향한 모든 불평등한 사태에 적극 개입할 의무가 생긴다.

또 당사국은 협약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유형의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증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토대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보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과학

기술과 시스템을 비롯한 정보 및 의사소통, 그리고 공개된 또는 공중에게 제공되는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다른 나라로 떠날 자유(제18조)”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세계 어느 나라든 장애인이 이동할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것이 여행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참여)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에게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a)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원 접근을 향유한다.
- (b)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TV 프로그램, 영화, 연극 등 문화활동 접근을 향유한다.
- (c)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여행 서비스 등 문화활동 및 서비스 공간 접근권을 향유하고 국내 문화유산 및 유적 접근권도 최대한 향유한다.

...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장애인이 모든 수준의 주류 스포츠 활동에 가능하면 최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b) 장애인이 장애인 전문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자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 (c) 장애인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여행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 (e)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여행, 레저, 스포츠 단체나 업체의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상의 경과를 통해 볼 때, UN이 제시하는 장애인의 여행할 권리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2년 UN이 채택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은 처음으로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할 기회를 보장”한다. 그 뒤 1993년 ‘장애인의 기회 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에서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를 보장하고, 마침내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참여)는 장애인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여행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UNWTO의 노력

① 마닐라 선언(Manila Declaration)

1980년 UN 세계여행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이하 ‘UNWTO’)는 ‘마닐라 선언⁵⁾을 승인한다. 여기에 당시로는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즉, 여행할 권리를 보장하려면, “이 사회가 가장 실천적이고 효과적이며 차별을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접근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UNWTO는 이 선언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여행을 할 권리 개념을 만들어 냈다. 아울러 그런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마닐라 선언에 따라, UNWTO는 해외 여행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여행하고 그곳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개별 국가들과 협정을 맺었다.

② 1990년대 장애인 여행 기회 창출(Creating Tourism Opportunities for Handicapped People in the Nineties)

1991년 UNWTO는 결의문 A/RES/284(IX)를 발표한다. 이 결의문에는 1980년대 UNWTO가 추진한 장애인의 제약 없는 여행을 위한 노력을 계승하는 ‘1990년대 장애인 여행 기회 창출’이라는 문건이 들어 있다. 이 문건은 장애인 여행자들에게 실천적이고 효과적이며 차별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건은 각 국가들이 “여행 서비스와 새로운 관광 시설을 만들고 가능하면 기존 시설물을 개조하기 위한 자국 규정 개정 적용할”⁶⁾ 지침을 제시한다. 이 지침은 여행자 정보 및 여행 홍보, 관광 종사자 교육, 공통 요구 사항 및 특별 설비 관련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③ 국제 여행 윤리규범(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

1999년 UNWTO 총회는 ‘국제 여행 윤리규범’을 승인한다. 이 규범은 지속가능한 국제 여행 개발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고하고 준수할 원칙이자 기본 뼈대다. 또 이 규범은 여행 관련 이해

5) World Tourism Organization (1980), Manila Declaration, Madrid.

6) World Tourism Organization (1991), Resolution A/RES/284(IX), Madrid.

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한다. 그리고 당시까지 수 십 년에 걸쳐 UNWTO가 채택한 여러 문건들, 이를 테면 마닐라 선언, 여행자권리장전(Tourism Bill of Rights), 여행자 규범(Tourist Code)을 집대성한 것이다.

UNWTO가 국제 여행 윤리규범을 제정한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사회 진화에 따라 고려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을 포함하여 더욱 강화된 문건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21세기 새천년을 앞두고 전 세계 여행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단일한 열개를 만드는 것이다.

국제 여행 윤리 규범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 차례 언급한다. 특히, 규범 제2조(개별적, 집단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여행)와 제7조(여행의 권리)는 장애인의 여행할 권리와 모든 여행 관계자들이 장애인의 여행과 이동을 장려하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제2조의 3 : 여행 활동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여행 활동을 통해 인권,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 가령 아동, 노인, 장애인, 인종적 소수자, 원주민의 인권이 신장되어야 한다.

...

제7조의 1 : 지구의 자원을 발견하고 향유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접근은 모든 지구인들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는 권리다. 자국 및 국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은 자유 시간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위 조항은 모든 여행자들이 평등하고,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장려하고, 여행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모두가 접근 가능한 여행(Accessible Tourism for All)

2005년 UNWTO는 결의문 A/RES/492(XVI)를 채택한다. 이 결의문에는 ‘1990년대 장애인 여행 기회 창출’을 시대 변화에 맞게 수정한 ‘모두가 접근 가능한 여행(Accessible Tourism for All)’이라는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건은 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정의하면서 시작한다. “자신이 직면하는 환경 때문에 관계를 맺을 능력이 제한되어 고통당하고 여행을

할 때 특별한 편의시설 욕구를 비롯한 여행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신체적·감각적·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노인과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의료적 건강이상을 가진 개인들”⁷⁾다시 말해,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란 단순히 의료적 의미의 장애인뿐 아니라 연령 등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게다가 ‘모두가 접근 가능한 여행’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묶은 지침을 담고 있다.

- 여행 정보 및 홍보 : 홍보 자료를 준비할 때 명심해야 할 사항, 관광안내소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시설과 관련하여 제공해야 할 여행 정보, 예약에 필요한 접근성 표준, 여행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지침
- 종사자 교육 :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장애 고객들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처하고, 의사소통을 비롯하여 이런 고객들에게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 공통 요구사항 : 여행 시설과 장소에 갖추어져 있어야 할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승강기, 공중 전화, 공중 화장실, 장애인 할인 기준
- 특별한 설비와 관련된 요구사항 : 버스터미널과 기차역과 그 부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음식 배달, 박물관을 비롯한 여행자들이 좋아하는 건물, (관광 기차, 기선, 버스 등의) 유람 여행, 회의장, 주요 도로에 관한 기준

⑤ 여행 장려 선언 (Decla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ourist travel)

2009년 UNWTO 총회는 ‘여행 장려 선언’을 승인한다. 이 선언은 여행이 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국제 친선, 평화, 번영, 인간 해방을 보편적으로 존중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관광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2009년 총회는 UNWTO는 장애인권리협약 ‘일반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약속한다. 아울러 가맹국과 여행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의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가맹국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한다,

7)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05), Resolution A/RES/492(XVI), Accessible Tourism for All, Madrid.

- 자국의 여행 장소 및 시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고, 이들에게 추가 부담 없는 특별한 설비와 장비를 제공할 것.
- 여행 장소 및 시설과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 고객을 위한 대비를 갖추게 할 것.
- 장애인 편의설비와 장애인이 여행 도중 직면할 문제에 대한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자료를 제공할 것.

⑥ 결의문 A/RES/606(XIX)

2011년 UNWTO 총회는 ‘결의문 A/RES/606(XIX)’을 채택한다. 이 결의문의 핵심은 모두를 위한, 특히 장애인을 위한 여행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결의문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은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특출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여행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 이것은 2009년 총회 권고 사항과 장애인권리협약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이 결의문은 장애인 지원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지적한다. 이런 단체들과 맺은 협약을 통해 UNWTO가 장애인 지원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 것이다. 그래서 결의문은 교통, 의사소통, 접근 가능한 서비스와 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같은 다양한 여행 관련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준비하라고 UNWTO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또 결의문 제6조는 UNWTO가 접근 가능한 모두를 위한 여행과 관련된 활동에 기여하는 노력과 자원을 증강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라고 재촉한다. 그 결과, 2012년 UNWTO는 ACS재단과 협정을 맺고 현황 보고서를 준비하기로 한다. 그 뒤 ONCE재단, 스페인, 접근가능한여행 유럽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Accessible Tourism, ENAT)가 추가로 참여하여 모두를 위한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보고서 초안을 탄생한다.

⑦ 모두가 접근 가능한 여행 매뉴얼(Manual on Accessible Tourism for All - Public) 발간

2015년 UNWTO는 그 동안 논의한 결과를 집대성하여 <모두가 접근 가능한 여행 매뉴얼 - 민관 협력과 좋은 실천 Manual on Accessible Tourism for All -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Good Practices>을 발간한다.

이 매뉴얼은 모두가 접근 가능한 여행 정책을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스페인을 꼽는다. 특히, 스페인의 아빌라(Avila)와 말라가(Málaga)의 접근 가능한 여행 정책을 꼼꼼하게 소개한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공원과 국립공원, 스위스의 철도, 멕시코의 공항 등 세계 각국이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접근 가능한 여행을 위한 교통, 스포츠, 국제적 기술 협력 등에 대한 사례와 설명을 세세하게 제시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UNWTO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접근가능한 여행, 즉 여행의 보편성, 평등성,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3. 유럽연합의 가맹국 및 기관의 노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인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특별한 쟁점이 되었다. 인류 문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유럽인들이 전쟁 외중에 유대인과 장애인 등 소수자를 수백만 명 학살하리라고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유럽인들은 이 같은 참혹한 역사를 거치면서 보편적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대오각성하게 된다.

그 중 전 유럽이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증진시켜 나가주는 과정을 모두가 접근 가능한 여행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사회행동계획(Social Action Programme)

1974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취약계층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행동계획’을 채택한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담고 있다.

② 장애인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of Handicapped People)에 관한 결의문

1981년 12월 유럽이사회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사회통합에 관한 결의문’을 승인한다.

③ 유럽사회정책백서(White Paper on European Social Policy)

1994년 7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결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유럽사회정책백서’를 채택한다.

④ 장애인 여행자에게 접근가능한 유럽 만들기(Making Europe Accessible for Tourists with Disabilities) 제작

1996년 유럽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모든 사람의 기회 평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그리고 ‘장애인 여행자에게 접근가능한 유럽 만들기’란 제목의 여행 안내서를 제작한다. 이 안내서는 장애인 여행자들에게 적절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⑤ 암스테르담조약(Treaty of Amsterdam)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1999년 5월 ‘암스테르담조약’을 시행하고, 모든 유럽인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재천명한다. 또 장애인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행동에 들어간다. 이 조약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유럽이사회는 ... 성별, 인종이나 문화,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지향에 기초한 차별과 맞서 싸우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⑥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유럽을 위하여(Towards a Barrier Free Europ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제작

2000년 5월 유럽위원회는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유럽을 위하여’를 제작하고 베리어프리(barrier-free) 이념을 확산시키고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약속한다.

⑦ 유럽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2000/78/EC

2000년 12월 유럽위원회는 ‘유럽위원회 지침 2000/78/EC’을 발표한다. 이 지침을 통해 유럽연합은 최초로 장애인 차별 금지 원칙에 기초하여 장애인 고용 평등 기본 정책을 수립한다.

⑧ 모두를 위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여행(Socially sustainable tourism for everyone)에 관한 견해

2003년 10월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는 ‘모두를 위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여행(Socially sustainable tourism for everyone)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다. 이 견해에는 지속가능하고 접근가능한 여행 기준에 따라 장애인이 여행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100가지 제안이 들어 있다.

⑨ 행동계획(Action Plan) 2006-2015

2006년 4월 유럽이사회는 장애인의 권리와 완전한 사회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행동계획 2006-2015’를 채택한다.

⑩ 유럽 만민기회동등의 해(European Year of Equal Opportunities for All)

유럽연합은 인권에 기초한 평등과 차별금지를 장려하기 위해 2007년을 ‘유럽 만민기회동등의 해’로 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

⑪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완전참여 달성 결의문

2007년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완전참여 달성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 결의문은 유럽연합 가맹국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라고 권고한다. 특히, 디자인으로 인한 새로운 장벽의 탄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 단계부터 모든 사람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정책, 법률, 시책에 적극 도입할 것을 강조한다.

⑫ EU기본권리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2010년 3월 유럽연합은 ‘EU기본권리헌장’을 제정한다. 이 헌장은 사회변동, 사회진보,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헌장 제21조는 성별, 인종, 피부색, 문화나 사회적 기원, 타고난 모습, 언어, 종교나 신념, 정치 등 견해, 소수성, 재산, 출생, 장애, 연령, 성적 지향에 기초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또 26조는 장애인의 독립, 사회 및 직업 통합,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의 혜택을 볼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와 더불어 유럽위원회는 장애인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각 가맹국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8대 행동을 제시한다. 그 중 첫 번째가 접근성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들이 상품, 서비스, 보조기구, 교통, 시설, 정보, 의사소통 기술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⑬ 유럽장애전략(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

유럽위원회는 장애인의 사회 및 경제 참여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행사를 장려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유럽장애전략 2010-2020’을 제시한다.

Ⅲ. 우리의 과제 - 법적, 제도적 측면

장애인의 접근 가능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법적, 제도적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장애인 여행 개념의 명시화’와 ‘이동 및 접근성 강화’일 것이다. 접근성은 장애인의 다른 일상 삶에서도 중요한 요소겠지만, 자유로운 여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 장애 관련 인권 법률이나 복지 서비스 법률에 장애인의 여행을 지원하는

또 장애인이 여행에서 배제, 분리, 거부, 제한되지 않으려면 차별의 금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국내 장애인의 여행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편의증진법 개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절(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제3절은 재화와 용역 제공에서의 차별 금지 영역을 ①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제16조) ②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제17조) ③시설물 접근·이용(제18조) ④이동 및 교통수단 등(제19조) ⑤정보접근(제20조) ⑥정보통신·의사소통 등(제21조) ⑦문화·

예술활동(제24조) ⑧체육활동(제25조)으로 정하고 있다.

위 영역 중 장애인 여행 관련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이동 및 교통 수단 등’,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이다.

첫째, 이동 및 교통수단 차별 금지 영역에 대여사업자용 자동차(렌트카)를 포함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비롯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교통사업자가 장애인 차별금지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제2조는 “교통수단”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버스”)”로 국한한다. 다시 말해,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이 법이 규정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며,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자동차를 구비할 의무가 없다.

이 같은 불일치를 해결하려면,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제2조 “교통수단”을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버스”)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0조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와 대여사업용 자동차”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문화·예술활동 영역에 ‘여행’을 추가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는 ‘문화·예술활동’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 법은 ‘문화’를 학문과 예술 분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한다. 하지만 오늘날

‘문화’는 인간 삶의 전반적인 양식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를 테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당연히, ‘여행’도 인간 삶의 과정에서 습득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문화 양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제3절(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이 규정하는 차별 금지 영역에 ‘여행’을 별도의 조항으로 추가하거나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를 ‘문화·예술·여행활동의 차별금지’로 개정하여 장애인의 여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체육활동과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는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는 “체육”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으로 정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는 체육 및 학교체육만 규정하고 있고, 그 나머지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은 ‘체육으로 간주되는 신체활동’이다. 하지만 이 중 레저와 레크리에이션을 ‘체육’으로 간주하는 것은 원래의 의미를 왜곡 또는 축소시킨다.

두산백과사전 인터넷판을 보면, 레저는

여가라고도 한다. ... 레저는 생계를 위한 필요성이나 의무가 따르지 않고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으로서 활동을 행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다. ... 구속시간을 빼고 난 시간이 자유시간인데, 이것은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쓸 수 있는 시간으로 선택시간, 자유재량시간이라 한다.

또 레크리에이션은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레크레아시오’에서 유래되었다. 일반적으로 여가·레저(자유시간)에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행해진다. 외적 보수나 생존의 필요 때문에 강제됨이 없이,

일 자체에 직접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자유롭고 즐거운 활동을 말한다.

요약하자면, 레저는 ‘자유시간’ 그 자체이고 레크리에이션은 그 자유시간에 행하는 ‘자유롭고 즐거운 활동’이다. 여기에 체육활동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일광욕을 즐기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는 것도 레크리에이션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체육활동’ 조항에 레저와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하지만 실제로는 고전적 의미의 체육활동에서의 차별만 금지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달리 UN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제30조에서 ‘문화생활’과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을 하나로 묶고 관련된 차별 금지 조항을 열거한다. 이는 장애인의 여행할 권리가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개념에서 발달한 역사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국제적 흐름에 맞게 레저와 레크리에이션에서의 차별 금지를 ‘문화활동’ 또는 ‘여행’과 묶어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복지법 보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여행을 지원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다만, 법 제2장(기본정책의 강구)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나마도 제28조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끝맺음으로써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이고 임의적인 조항이다. 적어도 우리나라 법률에는 장애인 여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2장에 ‘여행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3.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 보완

2014년 5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제47조의 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 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7조의 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가 신설되었다.

제47조의 3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여행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관광 지원 사업 및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47조의 4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및 관광 활성화를 장려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47조의 5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장애인 여행 활성화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최근 이 조항들이 신설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직은 출발 단계지만 국회와 정부가 장애인의 여행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다.

다만,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장애인 여행 지원 조항들이 모두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의 부가 조항 형식으로 기술되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관광정보 활용’과 장애인 여행 지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조항들 사이에 호응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 여행 지원 사항을 별도의 독립 조항들로 구성하는 것이 조항의 위상이나 법 기술 측면에서도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기존 조항에 덧붙여 장애인 여행 및 관광의 철학적 배경, 장애인 관광 기본계획,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는 새 조항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 2005년 UNWTO가 채택한 ‘모두가 접근 가능한 여행(Accessible Tourism for All)’ 지침 4가지 중 국내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여행 정보 및 홍보’와 ‘종사자 교육’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행 정보 및 홍보’의 경우 관광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 교육’의 교육의 경우 관광기본법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관광진흥법 제39조(교육),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아울러 관광기본법에 ‘모두가 접근가능한 여행’ 개념을 도입하여 UNWTO가 제시하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권리를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4. (가칭)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광진흥법에 장애인 여행 지원 조항이 일부 있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하는 데는 턱없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별도의 입법을 통해 장애인의 여행할 권리를 보장하고 관광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장애인 사회가 힘을 모아 ‘(가칭)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 여행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장애 관련 법률이 20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면, 관광진흥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장애인 여행 관련 조항을 대폭 추가하여야 한다.

5. 장애인 여행 실태조사 및 국가 보고서 작성

법률 제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사이에 장애인 여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적이 없다. 장애인의 여행 욕구가 폭증하는 상황임에도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시행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정부가 장애인 여행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문화관광부든, 국가인권위원회든, 아니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장애인 여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현황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는 장애인 여행에 관한 욕구 분석, 철학과 개념 정리, 외국의 정책 경향, 국내 인프라 구축, 중단기 계획 수립, 법률과 제도 개선점 등을 도출해야 한다.

IV. 맺는말: “자립생활의 완성은 자유로운 여행이다.”

장애인 여행작가 전윤선씨는 평소 “자립생활의 완성은 자유로운 여행”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봤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 우선, 혼자서 혹은 친구 몇 명과 함께 여행을 하겠다는 계획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행에 경험이 없는 중증 장애인이라면 각종 매체에서 정보를 찾고 동료들의 조언도 듣고 목적지를 정할 것이다. 이때 자립생활 기술훈련을 받은 장애인이라면 주변의 자원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가고 싶은 곳을 정했다면, 활동보조인과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적절한 교통편을 알아봐야 한다. 또 숙소의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에 파악을 해 두어야 하고, 가능하면 근처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지도 미리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미지의 땅으로 여행을 가면 항상 뜻밖의 사건(또는 장애물)과 만날 수밖에 없다. 이를 테면, 기차에서 내렸는데 너무 오지여서 콜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펜션의 화장실 문이 좁아 휠체어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고, 근처 바다를 보고 싶지만 해변까지 휠체어로 내려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돌아다니다가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방전되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여행자 본인이 지금까지 익힌 모든 사회적응기술을 활용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하여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유쾌한 여행은 그것대로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고, 불쾌한 여행은 그것대로 생생한 공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계획하고, 자신의 힘으로 실행하고, 추억이나 고행을 자신만의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자유로운 여행”일 것이다. 자유로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여행 기간 동안에는 완전한 개인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영혼의 해방을 맛본다는 의미일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거리에서 공동 투쟁을 하고, 수많은 토론회에 참석하고, 이런저런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완전한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롭게 개별적인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실행, 자신만의 감흥 등 모든 것이 개인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자립생활의 완성은 자유로운 여행이다”고 한 것이 아닐까?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토론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장애인관광지원정책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장애인관광지원정책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I. 장애인관광 지원정책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조례」 제정

1.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지난 2013년 5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로(박주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조례」가 제정

2. 정의

- 관광약자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과 정보접근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자를 말함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 관광약자들이 제약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는 것을 말함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 : 관광약자들이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함

3. 시책수립

-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추진 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 시책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
 - 관광약자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복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 대상시설의 범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의 관광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가 규정하는 공영관광지
 -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 대상시설의 설치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의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시설 및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춘 제4조의 대상시설에 대해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함
- 도지사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시설 및 설비를 운영하는 자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3항제10호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용자 및 보조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음

6. 위원회의 설치

-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관광 자문위원회를 둠
- 자문 및 심의사항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시책 및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기준마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의 개선 및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장으로 함
 - 위촉직 위원은 도의원 및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7. 센터설치 및 운영

-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관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센터의 기능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
 - 접근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 접근가능한 관광 전문인력 양성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운영
 - 접근가능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사업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식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관광지문위원회 구성

1. 기본방향

- 도의회,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사 등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타 위원회와 중복이 안되도록 구성
 -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제3항
 -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 가입 제한
 - 여성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 45% 이상 충족(남 6명, 여 7명)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수 : 13명(위촉직 10명, 당연직 3명)

구 분	합 계	도의원	사회 복지	관 광	교 통	건 축	당연직	비 고
신 설	13	1	2	3	2	2	3	

○ 분야별 추천기관

- 도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추천 1명)
- 사회복지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추천 2명)
- 관 광 : 도 관광협회, 도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추천 3명)
- 교 통 :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추천 2명)
- 건 축 : 도 건축사회(추천 2명)

2. 복지관광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최

- 일시 : 2016. 4. 12(화), 16:00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1청사 한라홀(4층)
- 참석 : 복지관광자문위원회 위원(위촉직 10명, 당연직 3명),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복지관광자문위원 위촉장 수요(위촉직 10명)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2016년 관광약자 편의시설 추진계획 보고 등

3]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1. 사업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 사업개요

- 사업명 : 관광약자의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사업비 : 100,000천원

3. 추진상황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 : ' 14. 6.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위·수탁 협약 : ' 14. 6.
 - 위탁기간(3년) : 2014. 7. 1. ~ 2017. 6. 30, 315백만원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및 위탁계약
 - 1차년도(2014. 7. 1. ~ 2014. 12. 31) : 56,066천원
 - 2차년도(2015. 1. 1. ~ 2015. 12. 31) : 100,324천원
 - 3차년도(2016. 1. 1. ~ 2016. 12. 31) : 100,000천원
 - ※ 4차년도(2017. 1. 1. ~ 2017. 6. 30) : 58,610천원

4. 향후계획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관광약자 정보제공 및 안내체계 구축, 접근실태 모니터링
 - 관광업계 종사자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등

4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 지원
- 사업량
 - 장비지원(휠체어, 유모차 등) : 90대 이내
 - 시설지원(경사로, 점자블럭 등) : 사설 관광지 20개소 이내
- 사업기간 : '16. 3월 ~ 11월
- 사업비 : 106,000천원

2. 추진상황

- 2015년도 예산액 : 100,000천원
- 2015 사설관광지 편의시설(장비) 지원 완료 : 2015. 10. 7
 - 휠체어 : (42개소) 128대, 유모차 : (34개소) 108대
- 2015 사설관광지 편의시설(시설) 지원 완료 : 2015. 11월
 - 12개소 : 경사로정비, 장애인 주차라인 마킹·주차표지판·점자표지판 등

3. 향후계획

-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지원계획 수립 및 대상지 확정 : '16. 4월
- 장애인 편의시설 보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16. 5월

5 공영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보강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명 : 공영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보강사업
- 사업량
 - 공영관광지 내(2개소 제외) 경사로,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시설 등 보강

- 사업기간 : '16. 4월 ~ 11월
- 사업비 : 200,000천원
 - 경사로,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시설 등 : 2개소*100,000천원

2.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 : '13. 5. 15
-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계획 마련 : '15. 5월
- 2015년 공영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보강(6개소, 100백만원) : '15. 10월~ 12월
 - 6개소 : 비자립, 만장굴, 성산일출봉, 천지연, 천제연, 주상절리

3. 향후계획

-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지원계획 수립 및 대상지 확정 : '16. 4월
- 계약체결 및 사업시행 : '16. 5월

6] 관광약자 관광편의 증진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명 : 관광약자 관광편의 증진 사업
- 사업량
 - 시청각 장애인용 점자책, 소리책 제작 : 40,000천원
 - 관광약자 관광컨텐츠(CD, 동영상제작) 개발 : 30,000천원
 - 장애인 복지관광 가이드북 책자(이지제주 개정판) : 20,000천원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
- 사업비 : 90,000천원

2. 추진상황

- 장애인 복지관광 매뉴얼 책자'이지 제주'발간(2013년)

- 시각장애이용 점자 책자 ‘함께, 아름다운 제주를 바라봅니다’ 발간(2014년)
- 제주관광 수화동영상 및 소리도서 발간(2014년)
- 웰컴센터 내 종합관광안내센터 무료 휠체어(40대) 대여사업 추진(연중)
- ※ 공항 내 종합관광안내소 : 10대

3. 향후계획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및 소리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2016. 4월 ~
- 관광약자 가이드북 (이지제주) 제작 및 배포 : 2016. 4월 ~
- 복지관광 콘텐츠(동영상, CD) 제작 및 배포 : 2016. 4월 ~

7] 관광약자 전세버스 장애인 리프트 설치 지원

1. 2013년 전세버스(1대) 장애인 리프트 설치 : 200,000천원

- 천지교통(2013. 5월), 휠체어 10대 탑승 가능

2. 2014년 전세버스(1대) 장애인 리프트 설치 : 200,000천원

- 한라교통(2014. 8월), 휠체어 10대 탑승 가능

3. 도내 전세버스 회사에서 현재 운영 중

II. 나가며

- 지난 2013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조성 조례」가 제정 된 후, 누구나 불편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 관광약자 접근성안내센터 운영, 전세버스 장애인 리프트 설치지원, 공영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사업, 관광인 관광코스 개발 사업 등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금년에도 역시 예산 5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나씩 하나씩 우리 제주가 관광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여 관광약자가 불편없이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복지관광 활성화를 통한 행복관광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위촉하신 복지관광지문위원의 지문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바른설치 등 인식개선을 통하여 관광약자의 차별없는 접근성을 조성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음.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토론

제주지역 관광관련조례와 UNWTO의 접근가능한 관광지침 적용여부 및 정책제안

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제주지역 관광관련조례와 UNWTO의 접근가능한 관광지침 적용여부 및 정책제안

김익근

제주국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토론에 들어가면서

이번 토론회는 제주지역 장애인의 관광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여행향유의 기회를 제 공하지는 취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고 있다. 최근 장애인 뿐만 아 니라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을 위한 쾌적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배리어 프리’ 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제주관광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적었던 것 같다.

주제발표를 통하여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강조해 온 ‘접근가능한 여행’을 실현하기 위한 국 제적인 노력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법 제도적 방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접근가능한 여행’이 단지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만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유익한 방안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계관광기구(UNWTO)는 관광에 대한 글로벌 윤리강령(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에서 ‘모든 사람은 관광을 통한 체험과 향유를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장애물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체적인 장애나 노화로 인해 관광자원 및 시설의 접근이 어렵거나 관광정보의 획득이 원활하지 않다면 관광 향유의 ‘기본권’ 행사는 제한적이게 된다. 결국 관광자원 및 서비스로의 ‘접근가능성 (accessibility)’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세계관광기구

(UNWTO)에서도 접근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05년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 (Accessible Tourism for All)'을 채택하여 관광시설의 접근성 확보와 종사자 교육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접근가능한 관광'을 '장애인 관광'으로 협소화할 경우 정책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100%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장애를 경험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교통약자이자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결국, 모든 사람이 접근가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자료 : 노영순, 접근가능한 관광의 필요성과 정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웹진, 2014.12.)

연간 1,300만명이 방문하는 제주도는 한국관광 1번지를 넘어서 글로벌한 국제관광지로 도약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관광객 모두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검토

1.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담고 있다.
- 관광진흥법에서는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관광을 바라보고 있다.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의3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47조의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2-1. 관광진흥 조례 제3장 제61조(평가의 기준)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에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즉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잘 갖추어진 관광사업체에 대하여 제주도가 지정하는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관광약자의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제3장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

제61조(평가의 기준) 도지사는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1. 법령준수
2. 건전하고 투명한 관광서비스
3. 관광서비스교육 실적, 상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

- 4. 종사원의 관광서비스 실태
- 5. 상품 및 서비스 만족도
- 6.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 7. 불편사항 등 관광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2-2. 제8장 제92조(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는 총 8장 99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단 한 줄만 언급되어 있다. 위의 관광진흥법에서 언급되고 있는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관광진흥 조례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8장 보칙

제92조(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관광사업 종사자, 관계자 교육 및 국·내외 교류사업
- 2. 관광사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 4.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및 경영여건 개선사업
- 5. 관광진흥사업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 사업
- 6.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
- 7. 관광콘텐츠(관광홍보물, 관광기념품 등) 제작사업
- 8.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사업
- 9.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광 복지 사업**
- 10.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 2011-06-29 조례 748호]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 유형별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개발)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2.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04.]

제25조(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의2(편의시설 설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사업**
-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3. 장애인 이동지원 및 특별운송에 관련된 사업 [본조신설 2015.11.4.]

제26조(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정책제언

1. '접근가능한 여행'의 실현을 위한 접근성 향상

1-1. 관광교통 수단의 확충 및 개선

장애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내 교통수단으로 전세버스는 단 2대, 렌터카는 9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0대가 넘는 관광전세버스와 3만대에 달하는 렌터카 숫자에 비하면 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주도내 관광교통 수단이 얼마나 열악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렌터카의 경우 장애인의 상태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일부 차량의 경우, 렌터카라는 이유로 장애인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이용객이 렌터카를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빈번히 장애인 주차위반 차량으로 오인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항 주차장의 경우에도 등록 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하고 있는 차량에 장애인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으면, 장애인 주차요금 할인을 못 받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해 특수 개조된 렌터카에 대해서는 장애인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공항 주차장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장애인 증명서 확인으로도 주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2. 정보접근성 향상

제주관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국내외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의 관광정보가 생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장애인들이 제주관광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와 형태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2. 관광종사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2-1. 장애인 접객에 대한 관광종사원 교육

장애인 여행객을 맞이하는 에티켓을 교육받거나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종사원은 거의 없다. 따라서 관광관련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고객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안내사 및 관광지 해설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 장애인 관광객에 대한 에티켓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2.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한다. 제주도의 수많은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여행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건강상태나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치 '교통약자 표준여행상품'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3.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제정

3-1. 관련 조례의 개정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하여 관광진흥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관광관련 내용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5월에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내용 가운데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에 대한 조항을 적절하게 관광진흥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3-2. 관련 조례의 제정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은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가 글로벌한 관광지로 도약하고 질적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접근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가치 '제주특별자치도 접근가능한 관광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계관광기구(UNWTO)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여 향후 제주도가 세계적인 ‘접근가능한 관광’의 모범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을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토론을 마치면서

〈일본 장애인 여행가 히데루 키지마의 발표문중 일부, 2012년〉

- 나는 일본에 있는 호텔의 장애인 객실에 묵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이다.
- 일본은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
- 장애 여부로 인간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 불편함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변화된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마라.

자료 : 노영순, 접근가능한 관광의 필요성과 정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웹진. 2014.12.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고 편리하고 ‘접근가능한 환경’, 즉 유니버설(보편적인)한 환경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에 명시된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와 차별되지 않는 서비스의 제공만으로 관광 접근성을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본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제주지역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가 관광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하여 ‘접근가능한 관광’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토론

접근 가능한 제주관광 장애물 없애기

송창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팀장



접근 가능한 제주관광 장애물 없애기

송창현

제주특별자치도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팀장

1. 들어가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네스코 3관왕에 걸맞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서 13년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었다. 제주관광 2천만시대 준비전략으로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조성”을 핵심 가치로 포함시키며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권과 복지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모두가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13년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이하 관광센터)를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다.

이 글은 14년도 7월에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는 관광센터에 접수된 상담내용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관광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대한 생각을 검토 해보고자 한다.

2. 여행활동 과정의 장애물

여행을 가기 위해선 우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에 맞는 준비를 해야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총 3가지의 과정을 통해 여행활동의 장애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계획하기

여행계획의 기본은 여행을 가려는 일정, 여행을 가려는 장소, 여행을 함께 가는 사람이다. 여행의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여행을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관광정보의 부족이다. 여행을 함께 가는 사람과 여행을 가려는 일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여행을 가려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한국관광공사, 2014)에 따르면 관광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주요 관광활동 정보원은 인터넷 및 메일광고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해 여행정보를 알아보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편리하나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정보를 얻는데 있어 큰 고비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 2013년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 제주지역의 관광지 및 숙박지의 웹 접근성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 134개 사이트 중 93개의 사이트가 접근 불가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장애인이 여행을 시작하는 과정인 계획단계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 준비하기

여행을 계획하였다면 그다음은 계획한 여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과정이 있을 것이다. 우선 어느 지역을 여행할지에 대한 관광코스를 짜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정에 맞게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동을 위해 렌트카를 예약하는 등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과정에서도 앞서 말한 장애물 이외의 또 다른 장애물이 등장할 수 있다.

우선 예약과 결제를 하기 위한 접근에서의 장애물이다. 대부분의 예약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항공권예약은 예약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수화통역사나 활동보조를 통해 전화예약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 결제 시 본인과 직접통화를 하는 단계에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곤 했다.

그러므로 결국 직접 찾아가서 예약을 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발생하게 된다.

제주여행에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렌트카 예약에 있어서는 더 큰 장애물이 있다. 휠체어 등의 보장구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인 경우 직접 운전할 수 있는 핸드컨트롤 부착차량의 수가 적어 예약이 힘들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약을 거부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장애인의 접근 가능한 여행을 위한 인프라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부족들이 그 장애물인 것이다.

○ 여행하기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동안 험난한 장애물이 많지만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여행을 하는 도중에는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을까?

첫째, 관광지 및 음식점, 숙박지의 물리적인 장벽이 가장 클 것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개정 되면서 편의시설 설치가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나 각종 기준을 준수 하지 않거나 편의증진법 자체가 완화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장애인들의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14년 관광센터에서 제주지역 우수관광사업체로 등록된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130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광지 38개소 중 37개소, 숙박업 63개소 중 18개소, 음식점 29개소 중 20개소, 전체 130개소 중 75개소 약 57.7%가 관광약자인 휠체어 이용자가 주출입구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 외의 민간 이용시설인 경우 접근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장애인을 관광산업의 소비자로 보지 않고 시혜와 동정,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인식의 장벽도 큰 장애물로 다가온다.

숙박업소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입실을 거부하는 사례나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식당 출입금지 등의 사례는 관광활동을 떠나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장애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및 지원체계가 없다.

지체장애인인 경우 물리적 접근성만 보장된다면 여행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인 경우는 그 문제가 다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를 통한 설명이 없으면 그들의 관광은 그저 눈으로 보는 것에만 그칠 수밖에 없다. (제주수화통역센터 관광전담통역사 1명, 수화통역화면제공관광지 1곳)

시각장애인인 경우 관광을 위해서는 관광해설사가 있어 관광지에 대한 해설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다.

발달장애인인 경우 인지수준과 적응행동,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한관광안내사 및 해설사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3. 장애물 없애기

관광센터에서는 다양한 상담 전화를 처리를 하는데, 보통의 내용은 이러하다.

“핸드컨트롤차량을 빌릴 수 있나요?”

“어디를 갈 수 있죠?”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있나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관광지 코스 좀 짜주세요”

“활동보조인을 배치해 줄 수 있나요?”

“관광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 있나요?” 등 상담을 하다보면 앞에 이야기한 여행의 계획 및 준비과정에서부터 장애물에 부딪힌 장애인들의 문의가 대다수이다.

앞서 이야기한 장애물을 넘어서 여행을 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여행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없애 나가야 한다.

“정보접근의 장애물”, “물리적 환경의 장애물”, “사회적 인식의 장애물”

이러한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행정과 도내 관광관련 업체 및 학계에서의 아래와 같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법에 근거한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도의 지도·감시 기능의 강화
- 법에 근거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이동수단 확보를 위한 특수 차량 및 저상버스의 제도적 의무보유 및 관련 업체 지원체계 마련
-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관광관련 자격 취득 시 관련과목 신설,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관광업 관련 학과 복지관광 과정 추가 등)
- 장애유형별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지원인력 확보

그리고 이 협조체계 내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과거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 부과 집중단속으로 만들어진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안전벨트 착용은 당연한 것” 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낸 것은 제도적인 단속강화라고 보여 진다.

위의 사례와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회적인 인식과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차원의 지도감시와 우수업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4. 나가면서

최근 “힐링”이라는 단어가 언론매체 등에 자주 나오고 있다. 여행이 누군가에게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이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힐링”이 될 수 있는 반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슬한 장애물들로 인해 “킬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오늘의 토론회는 제주지역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시켜 제주도를 복지관광의 세계적 메카로 성장시키고, 2천만 제주관광시대를 여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 2천만시대 준비전략에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조성”을 핵심가치로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방안을 제주지역사회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부록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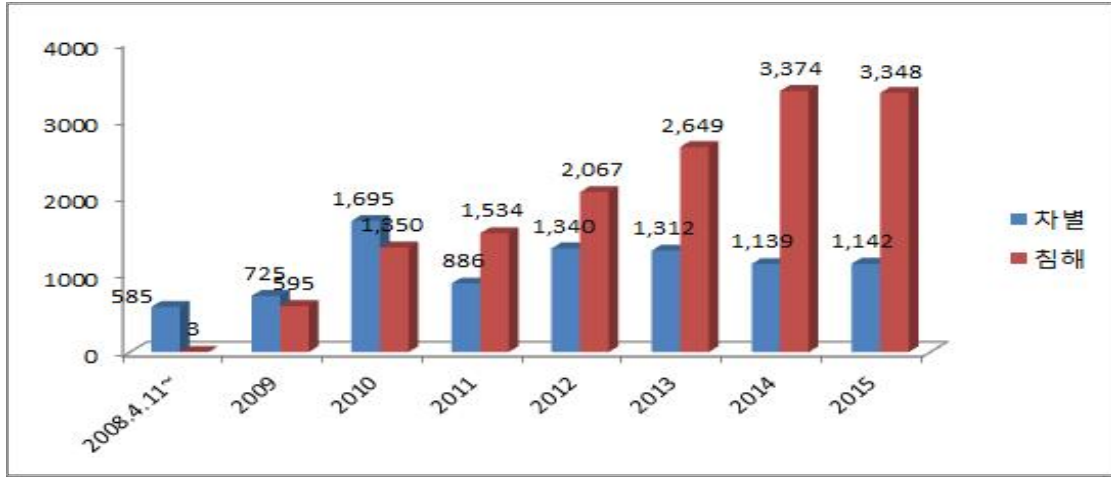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연도	진정건수	장애분야		비고
		차별	침해 (정신보건시설)	
계	23,744	8,824	14,920	
2008.4.11.~	588	585	3	
2009	1,320	725	595	
2010	3,045	1,695	1,350	
2011	2,420	886	1,534	
2012	3,407	1,340	2,067	
2013	3,961	1,312	2,649	
2014	4,513	1,139	3,374	
2015	4,490	1,142	3,348	

* 침해사건은 주로 ‘정신보건시설’ 관련 사건임.



[그림 1]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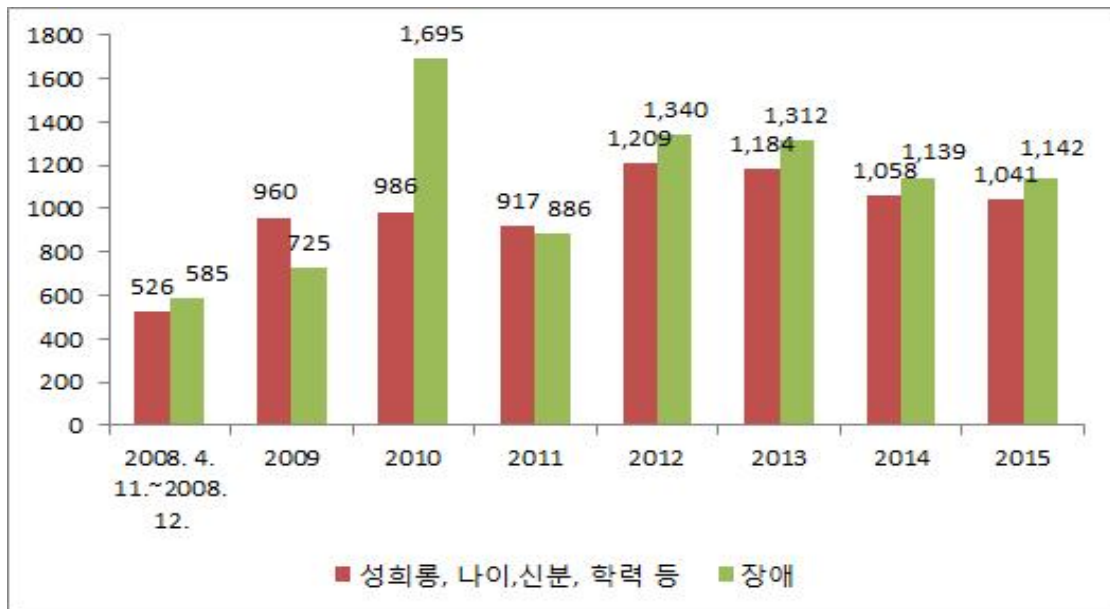
2.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2015.12.)

(단위: 건,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총계	2001. 11.~ 2015. 12.	진정건수	20,974	11,497	9,477
		비율(%)	100.0	54.8	45.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2008. 4. 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84.7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2015. 12.	진정건수	16,705	7,881	8,824
		비율(%)	100.0	47.2	52.8
	2008. 4. 11.~ 2008. 12.	진정건수	1,111	526	585
		비율(%)	100.0	47.3	52.7
	2009. 1.~ 2009. 12.	진정건수	1,685	960	725
		비율(%)	100.0	57.0	43.0
	2010. 1.~ 2010. 12.	진정건수	2,681	986	1,695
		비율(%)	100.0	36.8	63.2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2011. 1.~ 2011. 12.	진정건수	1,803	917	886
		비율(%)	100.0	50.9	49.1
	2012. 1.~ 2012. 12.	진정건수	2,549	1,209	1,340
		비율(%)	100.0	47.4	52.6
	2013. 1.~ 2013. 12.	진정건수	2,496	1,184	1,312
		비율(%)	100.0	47.4	52.6
	2014. 1.~ 2014. 12.	진정건수	2,197	1,058	1,139
		비율(%)	100.0	48.2	51.8
	2015. 1.~ 2015. 12.	진정건수	2,183	1,041	1,142
		비율(%)	100.0	47.7	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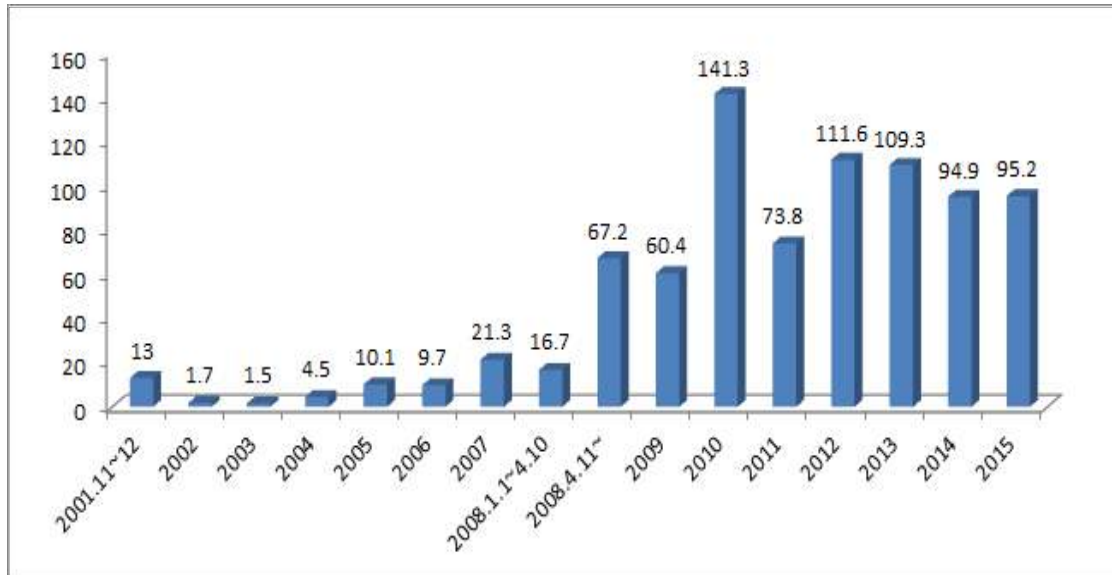


[그림 2]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나.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5.12.)

(단위: 건)

연도 (년) 구분	합계	2001 (11~ 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 4.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2008 (4.11~ 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 진 정 건 수	9,447	13	20	18	54	121	116	256	55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2
월 평 균	56.1	13	1.7	1.5	4.5	10.1	9.7	21.3	16.7	67.2	60.4	141.3	73.8	111.6	109.3	94.9	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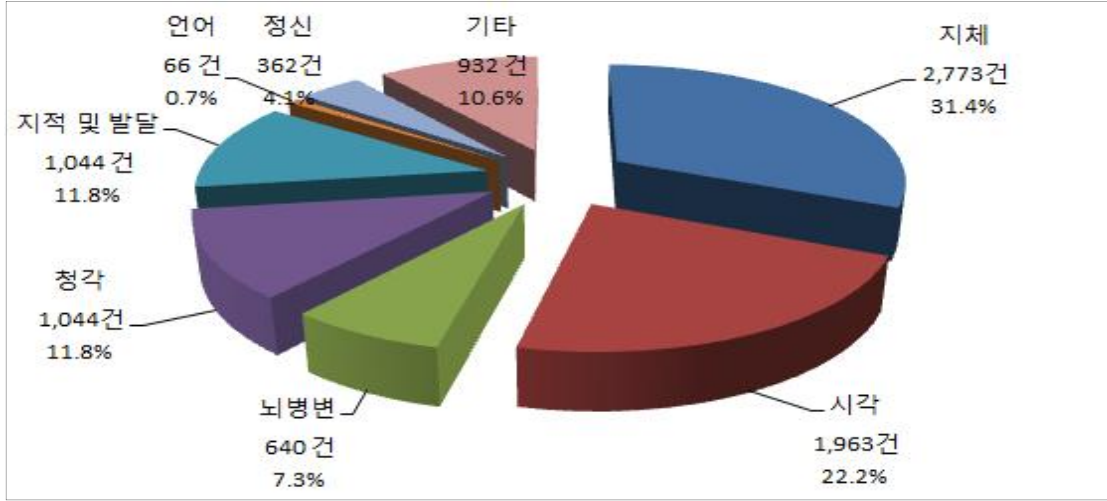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5.12.)

다. 장애유형별 장애자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 및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전체	계	8,824	2,773	1,963	640	1,044	1,044	66	362	932
	비율	100.0	31.4	22.2	7.3	11.8	11.8	0.7	4.1	10.6
2008	건수	585	72	85	35	45	29	1	15	303
	비율	100.0	12.3	14.5	6.0	7.7	4.9	0.2	2.6	51.8
2009	건수	725	288	91	69	46	70	11	44	106
	비율	100.0	39.7	12.6	9.5	6.3	9.7	1.5	6.1	14.6
2010	건수	1,695	508	427	136	275	181	8	73	87
	비율	100.0	30.0	25.2	8.0	16.2	10.7	0.5	4.3	5.1
2011	건수	886	297	142	57	72	214	8	48	48
	비율	100.0	33.5	16.0	6.5	8.1	24.2	0.9	5.4	5.4
2012	건수	1,340	492	193	87	142	231	13	47	135
	비율	100.0	36.7	14.4	6.5	10.6	17.3	1.0	3.5	10.1
2013	건수	1,312	380	299	71	251	115	7	50	139
	비율	100.0	29.0	22.8	5.4	19.1	8.7	0.5	3.8	10.6
2014	건수	1,139	402	290	92	112	104	13	55	71
	비율	100.0	35.3	25.4	8.1	9.8	9.1	1.1	4.8	6.2
2015	건수	1,142	334	436	93	101	100	5	30	43
	비율	100.0	29.2	38.2	8.1	8.8	8.8	0.4	2.6	3.8
등록 장애인 구성비 ¹⁾	인원 (천명)	2,494	1,296	253	252	253	203	18	97	122
	비율	100.0	52.0	10.1	10.1	10.1	8.1	0.7	3.9	4.9

1)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14. 12.(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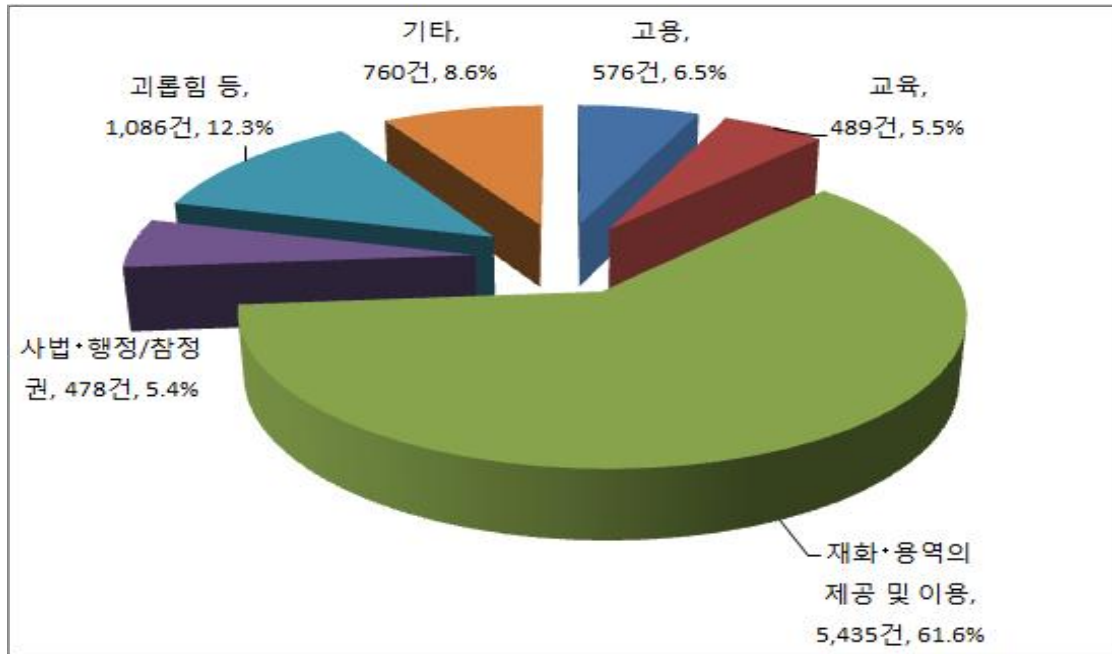
[그림 4]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5.12.31.)

라.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전체	접수	8,824	576	489	5,435	1,313	627	1,147	643	1,400	305	478	1,086	760
	비율	100.0	6.5	5.5	61.6	14.9	7.1	13.0	7.3	15.9	3.5	5.4	12.3	8.6
2008 (4~12)	접수	585	41	61	347	37	49	78	128	35	20	55	42	39
	비율	100.0	7.0	10.4	59.3	6.3	8.4	13.3	21.9	6.0	3.4	9.4	7.2	6.7
2009	접수	725	69	49	412	153	91	93	49	13	13	42	105	48
	비율	100.0	9.5	6.8	56.8	21.1	12.5	12.8	6.8	1.8	1.8	5.8	14.5	6.6
2010	접수	1,695	82	55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176	74
	비율	100.0	4.8	3.2	74.9	17.5	3.8	15.5	6.1	29.9	2.1	2.3	10.4	4.4
2011	접수	886	64	62	487	179	70	67	67	45	59	80	105	88
	비율	100.0	7.2	7.0	55.0	20.2	7.9	7.6	7.6	5.1	6.6	9.0	11.9	9.9
2012	접수	1,340	82	96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111	150
	비율	100.0	6.1	7.2	60.3	14.0	11.4	18.8	3.0	3.1	9.9	6.9	8.3	11.2

구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2013	접수	1,312	75	45	706	154	55	128	49	307	13	71	303	112
	비율	100	5.7	3.4	53.8	11.7	4.2	9.8	3.7	23.4	1.0	5.4	23.1	8.5
2014	접수	1,139	94	66	676	180	62	142	108	166	19	61	123	118
	비율	100	8.2	5.7	59.4	15.8	5.4	12.5	9.5	14.6	1.7	5.4	10.8	10.4
2015	접수	1,142	69	55	729	126	82	124	99	286	12	37	121	131
	비율	100.0	6.0	4.8	63.8	11.0	7.2	10.9	8.7	25.0	1.1	3.2	10.6	11.5



[그림 5]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5.12.31.)

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단위: 건)

구 분		2001. 11.25. ~ 2008. 4.10.	2008. 4.11. ~ 2008. 12.31.	2009. 1. 1. ~ 2009. 12.31.	2010. 1. 1. ~ 2010. 12.31.	2011. 1. 1. ~ 2011. 12.31.	2012. 1. 1. ~ 2012. 12.31.	2013. 1. 1. ~ 2013. 12.31.	2014. 1. 1. ~ 2014. 12.31.	2015. 1. 1. ~ 2015. 12.31.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8년 (2008. 4.~ 2015. 12.)
합계	전체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2	8,824
	월평균	8.5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2	94.9
고용	전체건수	153	41	69	82	64	82	75	94	69	729
	월평균	2	4.7	5.8	6.8	5.3	6.8	6.3	7.8	5.8	7.8
교육	전체건수	122	61	49	55	62	96	45	66	55	611
	월평균	1.6	7.0	4.1	4.6	5.2	8.0	3.8	5.5	4.6	6.6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8	706	677	729	5,642
	월평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8	56.4	60.8	60.7
사법· 행정 /참정권	전체건수	-	55	42	39	80	93	71	61	37	478
	월평균	-	6.3	3.5	3.3	6.7	7.8	5.9	5.1	3.1	5.1
괴롭힘, 기타	전체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415	241	252	2017
	월평균	2.2	9.3	12.8	20.8	16.1	21.8	34.6	20.1	21.0	21.7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간 동안(2001.11.25.~2008.4.10.)의 사건 접수 건수를 모두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포함함.

바.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5.12.31.)

(단위: 건)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발달	언어	정신	기타	
소계	8,824	2,773	1,963	640	1,044	1,044	66	362	932	
고용	576	206	57	49	94	43	10	34	83	
교육	489	68	78	51	55	166	4	11	56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용역 일반	1,313	451	232	153	91	210	11	53	112
	보험·금융	627	149	104	61	115	98	7	52	41
	시설물 접근	1,147	795	171	62	16	13	1	3	86
	이동 및 교통수단	643	339	106	48	20	35	4	2	89
	정보통신·의사소통	1,400	33	900	17	317	26	4	1	102
	문화·예술·체육	305	60	24	16	58	118	-	7	22
사법·행정	331	68	78	14	39	69	4	17	42	
참정권	147	55	26	2	3	4	-	2	55	
괴롭힘 등	1,086	279	64	106	202	196	12	128	99	
기타	760	270	123	61	34	66	9	52	145	

3.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세부 유형 및 주요 진정 사례

가. 고용 영역(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 분	고용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해고	교육	기타	
합계	합계	576	218	78	54	13	24	129	3	57
	비율	100.0	37.8	13.5	9.4	2.3	4.2	22.4	0.5	9.9
	공공	187	101	7	27	10	5	16	2	19
	민간	389	117	71	27	3	19	113	1	38
2008	합계	41	19	5	6	1	0	8	1	1
	비율	100.0	46.3	12.2	14.6	2.4	0.0	19.5	2.4	2.4
	공공	18	11	1	2	1	0	1	1	1
	민간	23	8	4	4	0	0	7	0	0
2009	합계	69	30	12	6	2	1	16	1	1
	비율	100.0	43.5	17.4	8.7	2.9	1.4	23.2	1.4	1.4
	공공	20	11	0	5	1	0	2	0	1
	민간	49	19	12	1	1	1	14	1	0
2010	합계	82	27	12	13	3	3	15	0	9
	비율	100.0	32.9	14.6	15.9	3.7	3.7	18.3	0.0	11.0
	공공	30	11	0	8	3	1	4	0	3
	민간	52	16	12	5	0	2	11	0	6
2011	합계	64	23	10	4	1	0	17	1	8
	비율	100.0	35.9	15.6	6.3	1.6	0.0	26.6	1.6	12.5
	공공	14	8	0	0	0	0	2	1	3
	민간	50	15	10	4	1	0	15	0	5
2012	합계	82	33	10	5	1	5	20	0	8
	비율	100.0	40.2	12.2	6.1	1.2	6.1	24.4	0.0	9.8
	공공	34	18	4	2	1	2	4	0	3
	민간	48	15	6	3	0	3	16	0	5

구 분	고용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해고	교육	기타	
2013	합계	75	28	10	6	1	1	17	0	12
	비율	100.0	37.3	13.3	8.0	1.3	1.3	22.7	0.0	16.0
	공공	29	15	1	4	1	0	2	0	6
	민간	46	13	9	2	0	1	15	0	6
2014	합계	94	38	11	11	3	5	22	0	4
	비율	100.0	40.4	11.7	11.7	3.2	5.3	23.4	0.0	4.3
	공공	24	16	1	4	2	0	1	0	0
	민간	70	22	10	7	1	5	21	0	4
2015	합계	69	20	8	3	1	9	14	0	14
	비율	100.0	29.0	11.6	4.3	1.4	13.0	20.3	0.0	20.3
	공공	18	11	0	2	1	2	0	0	2
	민간	51	9	8	1	0	7	14	0	12

나. 교육 영역(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시험평가 편의 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계	합계	489	68	52	92	39	85	32	121
	비율	100.0	13.9	10.6	18.8	8.0	17.4	6.5	24.7
	공공	334	29	28	46	28	82	26	95
	민간	155	39	24	46	11	3	6	26
2008	합계	61	9	14	14	7	6	3	8
	비율	100.0	14.8	23.0	23.0	11.5	9.8	4.9	13.1
	공공	34	6	7	5	5	5	1	5
	민간	27	3	7	9	2	1	2	3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 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2009	합계	49	16	2	8	13	1	3	6
	비율	100.0	32.7	4.1	16.3	26.5	2.0	6.1	12.2
	공공	28	7	2	4	8	1	2	4
	민간	21	9	0	4	5	0	1	2
2010	합계	55	4	10	12	6	4	7	12
	비율	100.0	7.3	18.2	21.8	10.9	7.3	12.7	21.8
	공공	35	0	1	6	5	4	7	12
	민간	20	4	9	6	1	0	0	0
2011	합계	62	10	6	7	1	3	0	35
	비율	100.0	16.1	9.7	11.3	1.6	4.8	0.0	56.5
	공공	43	6	5	1	0	3	0	28
	민간	19	4	1	6	1	0	0	7
2012	합계	96	9	2	13	3	51	2	16
	비율	100.0	9.4	2.1	13.5	3.1	53.1	2.1	16.7
	공공	79	3	1	9	2	51	2	11
	민간	17	6	1	4	1	0	0	5
2013	합계	45	9	7	6	3	7	2	11
	비율	100.0	20.0	15.6	13.3	6.7	15.6	4.4	24.4
	공공	30	2	6	6	3	5	2	6
	민간	15	7	1	0	0	2	0	5
2014	합계	66	6	10	17	2	10	8	13
	비율	100.0	9.1	15.2	25.8	3.0	15.2	12.1	19.7
	공공	44	3	6	8	1	10	5	11
	민간	22	3	4	9	1	0	3	2
2015	합계	55	5	1	15	4	3	7	20
	비율	100.0	9.1	1.8	27.3	7.3	5.5	12.7	36.4
	공공	41	2	0	7	4	3	7	18
	민간	14	3	1	8	0	0	0	2

다. 재화·용역 및 사범·행정 서비스 영역(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 분	재화·용역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사범·행정 /참정권	
합계	합계	5,435	1,313	627	1,147	643	1,400	305	478
	비율	550.4	24.2	47.8	182.9	56.1	217.7	21.8	100.0
	공공	2,207	605	54	508	357	481	202	450
	민간	3,228	708	573	639	286	919	103	28
2008	합계	347	37	49	78	128	35	20	55
	비율	100.0	10.7	14.1	22.5	36.9	10.1	5.8	100.0
	공공	140	9	5	26	83	9	8	54
	민간	207	28	44	52	45	26	12	1
2009	합계	412	153	91	93	49	13	13	42
	비율	100.0	37.1	22.1	22.6	11.9	3.2	3.2	100.0
	공공	154	66	7	33	36	4	8	41
	민간	258	87	84	60	13	9	5	1
2010	합계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비율	100.0	23.3	5.1	20.7	8.1	39.9	2.8	100.0
	공공	762	211	6	181	71	269	24	35
	민간	507	85	59	82	32	237	12	4
2011	합계	487	179	70	67	67	45	59	80
	비율	100.0	36.8	14.4	13.8	13.8	9.2	12.1	100.0
	공공	212	80	4	23	34	26	45	79
	민간	275	99	66	44	33	19	14	1
2012	합계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비율	100.0	23.3	18.9	31.2	5.0	5.2	16.5	100.0
	공공	353	83	9	119	27	15	100	90
	민간	455	105	144	133	13	27	33	3
2013	합계	706	154	55	128	49	307	13	71
	비율	100.0	21.8	7.8	18.1	6.9	43.5	1.8	100.0
	공공	175	52	7	39	28	45	4	68
	민간	531	102	48	89	21	262	9	3

구 분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 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2014	합계	677	180	62	142	108	166	19	61
	비율	100.0	26.6	9.2	21.0	16.0	24.5	2.8	100.0
	공공	224	67	8	49	43	48	9	48
	민간	453	113	54	93	65	118	10	13
2015	합계	729	126	82	124	99	286	12	37
	비율	100.0	17.3	11.2	17.0	13.6	39.2	1.6	100.0
	공공	187	37	8	38	35	65	4	35
	민간	542	89	74	86	64	221	8	2

라. 괴롭힘 등 영역(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계	합계	1,086	21	30	24	172	129	628	82
	비율	100.0	1.9	2.8	2.2	15.8	11.9	57.8	7.6
	공공	144	6	2	4	24	5	88	15
	민간	942	15	28	20	148	124	540	67
2008	합계	42	0	0	3	5	7	26	1
	비율	100.0	0.0	0.0	7.1	11.9	16.7	61.9	2.4
	공공	2	0	0	0	0	1	0	1
	민간	40	0	0	3	5	6	26	0
2009	합계	105	1	4	6	19	16	53	6
	비율	100.0	1.0	3.8	5.7	18.1	15.2	50.5	5.7
	공공	18	1	0	0	4	0	12	1
	민간	87	0	4	6	15	16	4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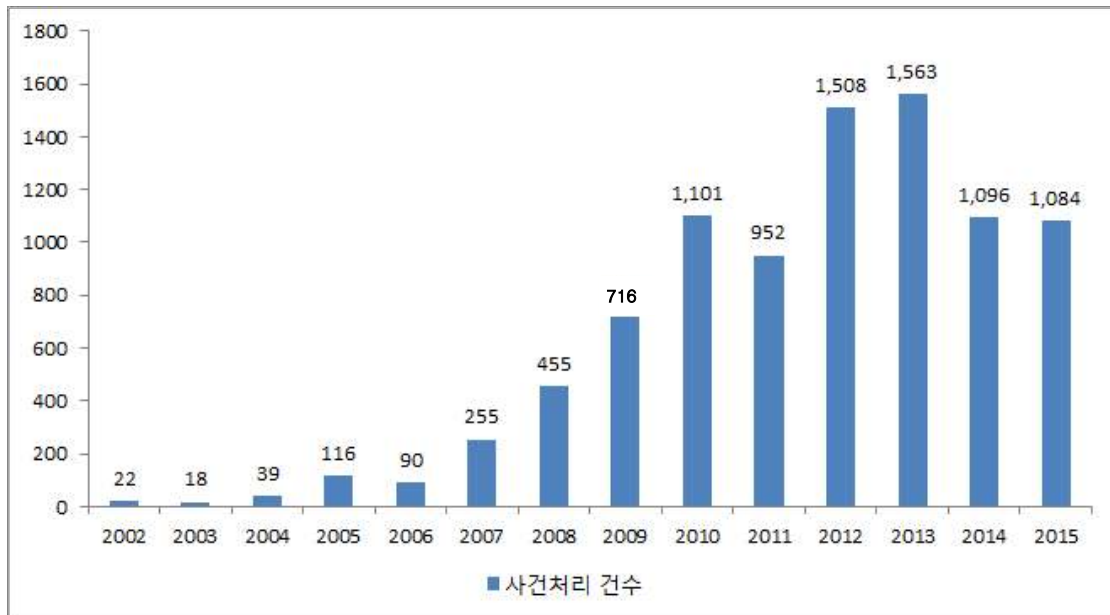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2010	합계	176	3	10	2	40	23	77	21
	비율	100.0	1.7	5.7	1.1	22.7	13.1	43.8	11.9
	공공	32	1	1	0	6	1	16	7
	민간	144	2	9	2	34	22	61	14
2011	합계	105	4	4	0	22	16	50	9
	비율	100.0	3.8	3.8	0.0	21.0	15.2	47.6	8.6
	공공	19	0	1	0	4	1	12	1
	민간	86	4	3	0	18	15	38	8
2012	합계	111	4	4	1	22	18	50	12
	비율	100.0	3.6	3.6	0.9	19.8	16.2	45.0	10.8
	공공	17	1	0	0	2	0	13	1
	민간	94	3	4	1	20	18	37	11
2013	합계	303	5	2	5	24	19	233	15
	비율	100.0	1.7	0.7	1.7	7.9	6.3	76.9	5.0
	공공	16	1	0	2	1	0	10	2
	민간	287	4	2	3	23	19	223	13
2014	합계	123	2	3	6	17	20	67	8
	비율	100.0	1.6	2.4	4.9	13.8	16.3	54.5	6.5
	공공	18	2	0	2	4	2	8	0
	민간	105	0	3	4	13	18	59	8
2015	합계	121	2	3	1	23	10	72	10
	비율	100.0	1.7	2.5	0.8	19.0	8.3	59.5	8.3
	공공	22	0	0	0	3	0	17	2
	민간	99	2	3	1	20	10	55	8

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5.12.31.)

(단위: 건)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9,015	22	18	39	116	90	255	455	716	1,101	952	1,508	1,563	1,096	1,084



[그림 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5.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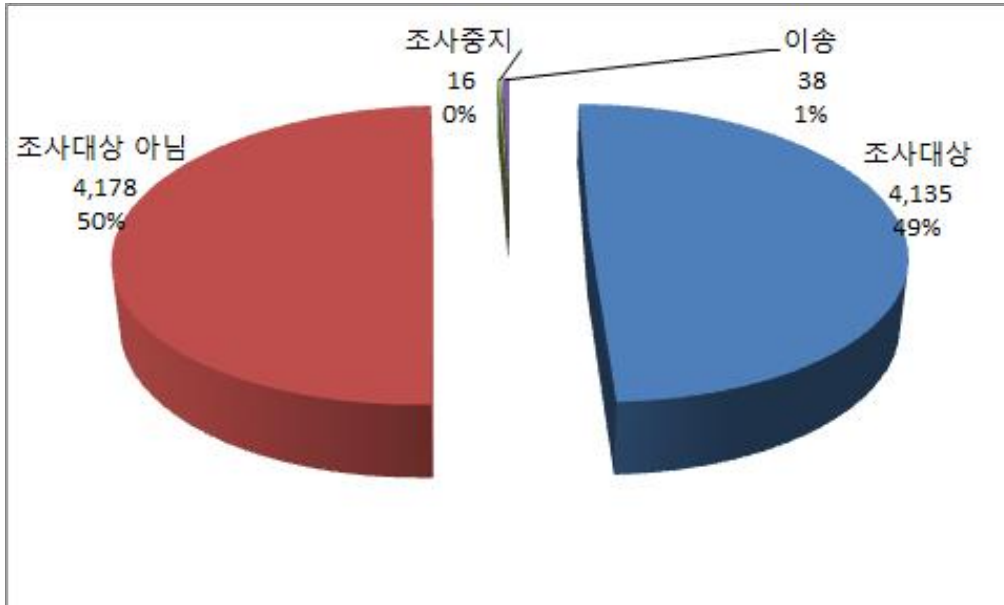
나.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4.11.~2015.12.31.)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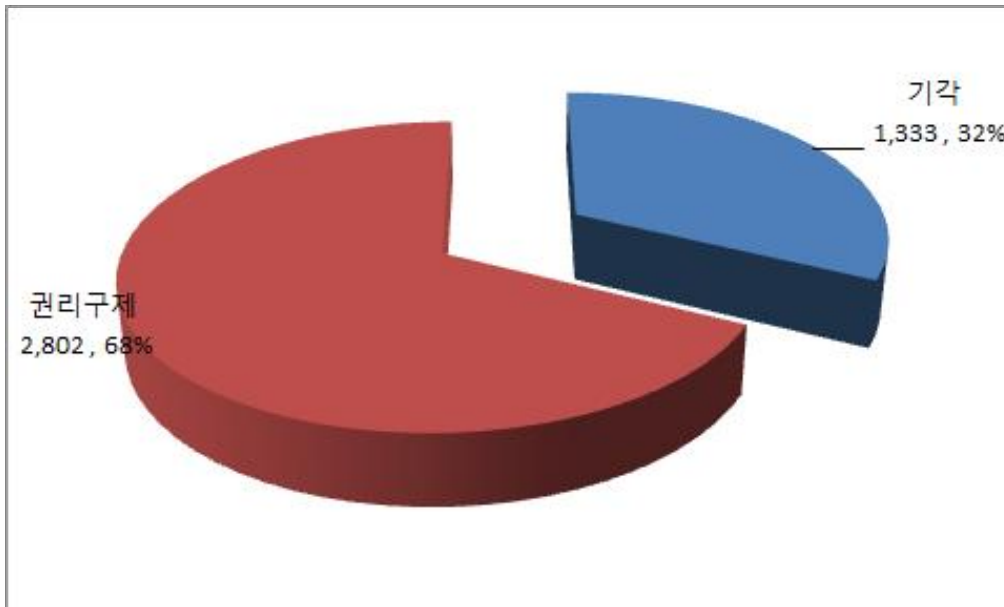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8,367	4,135	2,802	353	2	325	2,122	1,333	4,178 (2,915)	16	38
구성비 (%)	100.0	100.0	100.0	12.6	0.1	11.6	75.7				
			67.8					32.2			
		49.4							49.9	0.2	0.5
2008년	347	156	92	14	-	11	67	64	190 (116)	1	-
구성비 (%)	100.0	100.0	100.0	15.2	-	12.0	72.8				
			59.0					41.0			
		45.0							54.8	0.3	-
2009년	716	355	209	8	-	47	154	146	351 (236)	4	6
구성비 (%)	100.0	100.0	100.0	3.8	-	22.5	73.7				
			58.9					41.1			
		49.6							49.0	0.6	0.8
2010년	1,101	417	262	28	1	56	177	155	663 (369)	6	15
구성비 (%)	100.0	100.0	100.0	10.7	0.4	21.4	67.6				
			62.8					37.2			
		37.9							60.2	0.5	1.4
2011년	952	566	361	124	-	32	205	205	381 (228)	1	4
구성비 (%)	100.0	100.0	100.0	34.3	-	8.9	56.8				
			63.8					36.2			
		59.5							40.0	0.1	0.4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2012년	1,508	890	701	116	-	20	565	189	616 (495)	1	1
구성비 (%)	100.0	100.0	100.0	16.5	-	2.9	80.6				
			78.8					21.2			
		59.0						40.8	0.1	0.1	
2013년	1,563	807	643	29	-	79	535	164	755 (459)	-	1
구성비 (%)	100.0	100.0	100.0	4.5	-	12.3	83.2				
			79.7					20.3			
		51.6						48.3	-	0.1	
2014년	1,096	528	319	17	1	61	240	209	560 (452)	3	5
구성비 (%)	100.0	100.0	100.0	5.3	0.3	19.1	75.2				
			60.4					39.6			
		48.2						51.1	0.3	0.5	
2015년	1,084	416	215	17	-	19	179	201	662 (560)	-	6
구성비 (%)	100.0	100.0	100.0	7.9	-	8.8	83.3				
			51.7					48.3			
		38.4						61.1	-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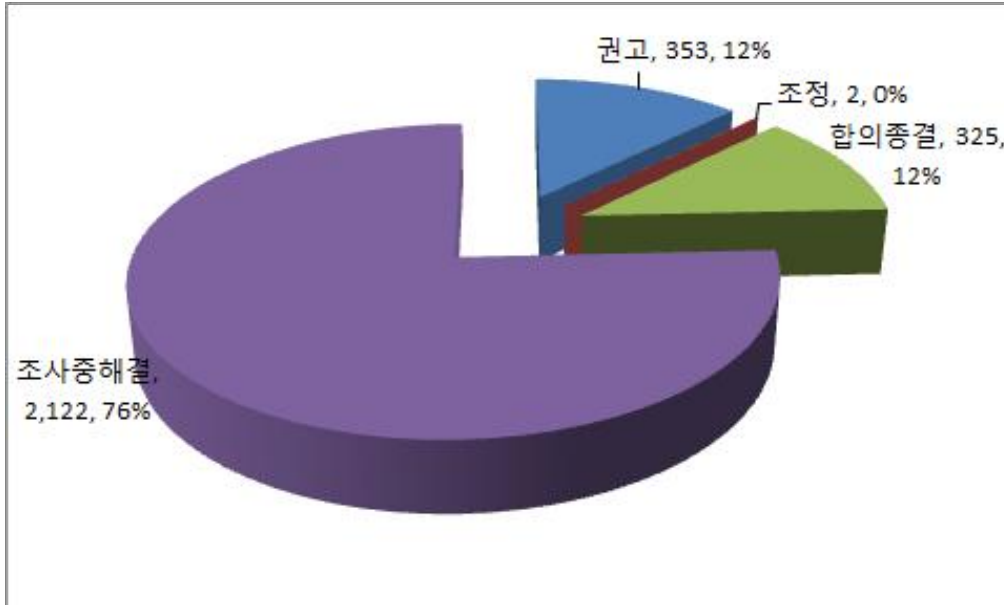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또한, '각하'에는 조사과정에서 진정원인이 해결된 경우나 취하 등으로 조사대상이 되지 않아 권리구제로 분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음. 2015년 각하(취하) 560건 중 159건은 '조사중해결'된 사건(29.3%)임.



[그림 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사건의 조사대상 여부



[그림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조사대상 사건 중 권리구제대상 현황



[그림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권리구제 대상사건 처리 결과

다.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합계	건수	8,367	4,135	353	2	325	2,122	1,333	4,178 (2,915)	16	38
	비율(%)	100.0	100.0	67.8				32.2			
				49.4				49.9	0.2	0.5	
고용	건수	554	189	11	-	37	21	120	360 (284)	4	1
	비율(%)	100.0	100.0	36.5				63.5			
				34.1				65.0	0.7	0.2	
교육	건수	471	216	12	-	35	119	51	251 (211)	-	3
	비율(%)	100.0	100.0	76.5				23.6			
				46.1				53.3	-	0.6	
재화·용역	건수	5,114	2,969	285	2	174	1,727	781	2,131 (1,581)	9	5
	비율(%)	100.0	100.0	73.7				26.3			
				58.1				41.7	0.2	0.1	
사법·행정 /참정권	건수	465	237	23	-	4	140	70	227 (149)	-	1
	비율(%)	100.0	100.0	70.5				29.5			
				51.0				48.8	-	0.2	
괴롭힘 등	건수	1,763	523	22	-	75	115	311	1,209 (690)	3	28
	비율(%)	100.0	100.0	40.5				59.4			
				29.7				68.5	0.2	1.6	

-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또한, '각하'에는 조사과정에서 진정원인이 해결된 경우나 취하 등으로 조사대상이 되지 않아 권리구제로 분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음.

라. 장애차별사건 시정권고 및 이행 현황(2008.4.11.~2015.12.31.)

1) 적용법률에 따른 인용(권고) 사건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권고 사건 수	353	11	12	285	23	22
국가인권위원회법	16	1	2	7	2	4
장애인차별금지법	337	10	10	278	21	18

2) 각 부문별 권고이행률 비교

(단위: 건)

구분	총계 (권고건수)	권 고 이 행 상 황				권고이행률 (%)	
		이행	일부이행	미이행	검토중		
합계	합계	353	322	24	5	2	95.1
	공공부문	158	143	9	4	4	95.7
	민간부문	195	179	15	1	-	95.6

- * 권고이행률 산정식 = {이행+(일부이행×0.5) / (전체 권고건수-검토중)} × 100
- **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국공립학교, 민간부문은 주식회사 등 법인 및 단체, 사립학교, 개인을 의미함.
- *** 이행: 위원회에 정식 통보되지 않았으나,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용처리함.
- **** 검토중 : 권고수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진행 중.

5.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직권조사 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1	10-직권-0001300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	11-직권-0000200	○○학교 교사의 시각장애여학생 안마강요 등에 대한 직권조사
3	11-직권-0000700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착취 등)에 대한 직권조사
4	11-직권-0001500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5	11-직권-00017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6	11-직권-00023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7	12-직권-0000700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8	12-직권-0000800	○○특수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9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10	12-직권-00010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1	12-직권-0001100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2	12-직권-0001400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3	12-직권-0001700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4	13-직권-0000400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5	13-직권-0000500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6	13-직권-0000600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7	13-직권-00024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8	14-직권-0000100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19	14-직권-0001700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20	15-직권-0001300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21	15-직권-0000900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붙임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 관련 사업 및 정책 권고·의견표명 (2008년~2015년)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념 토론회 개최 (2009~201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법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 (2009~2015)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모니터링기관에 송부하여 즉각적인 개선 유도 및 정책과제 발굴
3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2009~2012)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이용, 사법·행정절차, 인적서비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4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독점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2008)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 부여제도는 현존하는 차별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이고, 위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안마사업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
5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간 및 정책권고 (2009)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및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6	시각장애인 참정권 차별개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2010)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의견 표명
7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개념 명시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할 것,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인정시간을 확대하고 장애등급 심사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 표명
8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박은수의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의 주체 및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9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기술 내용이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의 법적능력, 자립생활지원, 접근성 제고, 고용과 노동, 교육 등에 통계자료를 추가하고, 협약 이행의 문제점과 장애요소 등을 추가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10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1)	시설물 건축에 대한 건축절차와, 편의증진법과 건축 간의 관계 검토를 통하여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등을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점 등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1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책권고 (2011)	은행 시설물, 금융자동화기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10개 은행장에게 권고
12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권고 (2012)	장애인 관련 주요 정부정책 및 법령 분석,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분야별 정책 의제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차별 행동 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3	장애차별 보험 가이드라인 작성 및 권고 (2012)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가입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
14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2013)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며,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 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 등을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5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2013)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법」 등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보조금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
16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증진을 위한 「도로법」 개정 권고 (2013)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가 도로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개정하고,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 설치의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증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도로법」 제42조에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7	법무사 자격시험 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개선권고 (2013)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은 약시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18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2013)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행정정부장관에게 권고
1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3)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절차 및 계속입원심사를 일원화, 입원연장 3회 이상시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환자에 대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강화, 공적기관에 의한 이송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 격리, 강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정신건강증진시설 출입 및 환자 면담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20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내부 안전장치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2014)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안전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과 △특별교통수단 운행권자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 안전사고 관련 사례교육, 안전장치 착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21	시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관련 정책 개선 권고 (2014)	최소 시력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
22	장애인관람석 설치기준의 장애인 관람편리성 제고 권고 (201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의 “20.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관람석또는열람석”의 가항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다른 관람석 또는 열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동행한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하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2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 (2014)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2012두20991)”에 대한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대법원 2012두20991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누6836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 중 파손되었을 경우, 의족은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4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2014)	방송,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나 관용구가 사용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25	장애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실시 (2009-2015)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2009),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실태조사(2010),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2011),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분류를 기준으로 한 외국판례 연구(2011),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2012),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2012),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2),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2012),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2012), 정신장애인 차별·편견해소를 위한 실태조사(2012),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2013), 장애인 고용보장 지원체계 연구(2013),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제품의 확산 연구(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증진 및 개선을 위한 연구(2014), 장애인주거지원제도 실태 및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2014), 특수학급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실태 및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2014), 중증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2014), 거주시설 종사자 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4),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장애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정신병원 격리·강박 피해 실태조사(2015)
26	각종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 개최 (2009-2015)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권리협약 한·일 국제심포지엄(2009), 아·태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0), 장애인권리협약 정보접근권 관련 국제심포지엄(2011),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및 편견해소 캠페인(2009-2012), 발달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2013),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컨퍼런스(201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201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4),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민사·가사재판 참여권 및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2014), 장애인 건강권 증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2014),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5),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2015),
27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발달장애인법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8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29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차별 관련 정책권고 (20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30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2015)	교육부장관에게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과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시설과 과정을 확충할 것을 권고함
31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5)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차별에 대한 대책으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참여 등 6개 과제,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활동강화 등 6개 과제,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특수교육교원 증원과 법정정원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권고함
32	「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가 지역 내 장애인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서울특별시장과 동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붙임2. 장애차별 진정사건 위원회 권고현황(2008.04.11~2015.12.31.)

□ 고용 영역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08진차0000945)	-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직권면직일부터 복직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	2009.8.28.	불수용 (시정 명령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로 인한 채용차별 (08진차0001213)	- 진정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	2009.11.6.	수용
3	권고 (위원회법)	채용면접시험 편의 미제공 (08진차0001093)	- 00청장에게, 향후 면접시험에서 장애응시자에게 편의가 제공된다는 점과 편의신청 절차를 사전고지하고 장애응시자가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게 편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0.2.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09진차0000490)	- 000000공사 사장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킬 것을 권고	2010.4.9.	불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군청의 부당인사로 의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1733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해당 과장 및 담당자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9.10.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10진정0480200)	- 피진정인에게,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그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적용할 것과, 인사 관련 부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9.27.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 차별 (13진정08894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14진정0632700)	-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에서의 편의미제공 (15진정0627300)	- 피진정인에게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	2015.8.20	일부 수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모욕 등 (14진정0560200)	- 0000000중앙회장에게, 피진정인의 장애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과 소속 임·직원들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 요구 (14진정0826600)	- 00중앙도서관장에게, 향후 소속 공무원 모집 시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어 듣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 교육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23)	-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 할 것을 권고 -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2008.12.22.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48)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부고시에 규정에서의 특수학교 차별 (08진차0000469)	- 공공교육기관이 특수학교를 고시규정의 지역주민 공공복지시설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2008.12.26.	수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수업배제 등의 차별 (10진정0710700)	-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 - 관리·감독 기관인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관 내 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 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 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2.1.10.	수용
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75100)	-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 시설의 재배치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2.6.13.	수용
1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0600)			
1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1100)			
1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미비 (13진정08760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교내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인문관의 지상과 지하의 모든 층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경사로를 정비할 것을 권고	2014.8.2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0	권고 (위원회법)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강요 등 (14진정0309200)	- 00학교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 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할 것 - .교육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 의 처리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 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 련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	2014.11.17.	수용
21	권고 (위원회법)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 차별 등 (13진정0787500)	- 00예술고등학교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 선할 것 - 경기도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 기평가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2014.12.16.	수용
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시설의 이용시 장애인차별 (14진정0870400)	-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재 발되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장애인 차 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지 않 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권고	2015.1.19	수용
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학생에 대한 전학강요 (15진정0280500)	-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에게, 피해자를 다른 학교 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퇴학시킨 피진정 인 1과 2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 피진 정인 1에게, 향후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 속 교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5.9.18	일부 이행

□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08진차0000281)	- 진정인의 보험청약 심사 개시 권고 -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 가지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 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 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08.7.23.	일부 수용
2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26)	-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 도록 전자문자인내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 여 고시할 것을 권고	2008.8.27.	수용
2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54)			
27	권고 (위원회법)	시각장애인용 음성 촉각정보 미제공으로 교통수단이용 차별 (08진차0000392)	- 버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편의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00광역시 교 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	2008.10.1.	수용
2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인출기 사용 제한 (08진차0000416 등 2건)	- 기존 ATM 은 업그레이드하고 향후 ATM 구입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춘 ATM을 구입하 는 방식으로 영업점 마다 최소1 대이상의 시각장 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ATM을 배치할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29	권고 (장애인차별 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44)	- 장애인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시 금지된 차별행 위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6.12.	수용
3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86)	- 피해자의 보험청약 재심사, 직원 인권교육, 심신 상실·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 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등 마련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8.7.	수용
31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08진차0000529)	-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것을 권고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 이 없도록 00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09.9.1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거부에 의한 차별 (10진정0004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 대출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받기를 원할 경우 대출심사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 감독기관인 00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권고 	2010.7.19.	수용
3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차별 (09진차0001012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은행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시중은행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조속히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3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09진차0000231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00지하도'에 승강기를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3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건물 임대시 장애차별 (10진정035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0대표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 00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3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하나뿐인 장애인 대형면허 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245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3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 (10진정029100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에게 진정인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족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즉시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줄 것, 신용카드 발급동의 확인 시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권고 	2010.8.25.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등 (09진차0001552 등 6건)	- 피진정인 000 대표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들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0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9.10.	일부 수용
3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55)	-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험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0.10.20.	일부 수용
40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0)		2010.10.20.	일부 수용
41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3)		2010.10.20.	수용
4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에 의한 차별 (09진차0001023)	- 00000위원장에게,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2010.10.20.	수용
4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수영시설 이용 제한 (09진차0001175)	- 00000청장에게, 당해 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 수련관등의 수영장 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1.1.6.	수용
4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10진정0377600)	- 피진정인 00 대표이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1.3.8.	수용
4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 거부 및 인격권 침해 (10진정0532200)	- 00 대표이사에게, 「00중앙회 여신업무방법」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유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 00000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00중앙회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011.4.26.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4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736800)	- 피진정인 00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 후 장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 로 검토하여 심사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2011.4.26.	수용
4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10진정0470000)	- 00시립 00도서관·00시장·00교육감에게, 휠체 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 움이 없도록 0000시립00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 설치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4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버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문자 안내판 제공 (10진정0373100 등 13건)	- 000장관에게 2009. 3. 1. 이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 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내부에도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 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 설 치 세부기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 령」의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하고, 마을버스 운송 업체들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버스 내부에 전자문자 안내판을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4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접근권 침해 (10진정0140200)	- 00지사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경기도여성비 전센터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 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5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철거 (10진정07653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대상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던 경사로를 철거 전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00000 상가변영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리단의 건물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 - 00000구청장에게, 대상건물이 관련 법령에 부합 하는 편의시설로 완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5.17.	일부 수용
5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8400 등 8건)	-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할 시에는 사본에 인쇄물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하 거나 사본의 내용을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 파일 등을 사본과 함께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편의 를 제공할 것,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업무를 담당 하는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000장관에게, 전국의 종합병원이 위에 제시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5.17.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66100 등 25건)	- 피진정인에게, 00동 등 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이 즉시 비치되도록 할 것과, 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도록 할 것,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6.30.	수용
5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2313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장애에게, 향후 보험회사가 진정인과 같은 청각장애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함에 있어 「상법」 제644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청약자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6.30.	수용
5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불편 등 (10진정0370410 등 9건)	-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것과, 실태 점검 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설치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 장관과 0000시장에게,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55	권고 (위원회법)	음식점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출입 제한 (09진차0001267)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을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0청장에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편의시설 설치·점검 누락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5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76701 등 39건)	- 00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00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57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이동권 제한 (11진정00749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1.8.22.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장애인 차별 (10진정037160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환승통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에는 경사로를, 000역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관할하는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교통행정기관인 00시장에게, 지하철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 	2011.8.22	수용
5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단속미비로 인한 차별 (10진정079480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단속 취약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피진정 백화점 및 대형마트 관리자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들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발견 시 관할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고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6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거부 (11진정031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사 주지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찰 내 시설물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사찰 내 전체 스님 및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대한불교00종 총무원장에게,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해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법당 등 사찰 시설물에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과,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종교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1.11.2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11진정0063900)	- 시각장애인이 00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행정 절차 및 서비스 등을 접근·이용하는 데 있어정당 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제 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행정기관에 대 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1.28.	수용
6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11진정0353900)	-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 가 내 각 층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 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승강기 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별도 대책 을 수립·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	2011.12.19	수용
6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제한에 따른 차별 (11진정0586500)	- 00000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관리사무소)장애계,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 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토록 당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애계 00000 아파트를 포함하여 관내 아 파트 입주민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이용에 대한 홍보와 위반 차량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2.1.10.	수용
6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피해보상금 산정에 있어 장애인 차별 (10진정0621700)	- 00광역시 0000공제회 이사장 에게, 진정인에 대 한 공제급여 심사과정에서의 하자과 90일이내의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 사정을 수용하고 재심사를 할 것, 담당자 인권교육 권고 - 교육과학기술부 및 00광역시교육감에게, 재발방 지대책 마련 권고	2012.3.23.	수용
6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홈페이지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 (10진정0608110 등 2건)	- 00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 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2012.3.23.	수용
6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거부 (11진정0194800)	- 00우체국에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재심사 할 것 과,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각200만원의 위자료 를 지급 할 것을 권고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 발하지 않도록 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 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5.1.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방송 웹사이트 장애인의 제공 미흡 (10진정0563400 등 93건)	- 해당방송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2012.5.1.	수용 (90건) 일부 수용 (2건)
6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11진정0074901)	- 00시장 및 00도시공사 사장에게, 00기념관 실내 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와 입수보조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6조 [별표5]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6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승강기 등 미설치로 인한 도서관 이용 제한 (11진정0371500)	- 00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의 자료실, 열람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7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5400)	- 00시가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7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 차등 부과는 장애인 차별 (11진정0555300)	- 003단지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타 세대에 비해 부당부과된 금액 총 47,990원을 진정인에게 환급 조치할 것과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승강기전기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피진정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주택 저층(2층 및 3층)에 거주하는 휠체어이용 장애인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72	권고 (위원회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11진정0317900)	- 00구청장에게 장애인이 00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7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527400)	- 00항공 대표이사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하여 항공기 탑승편의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가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7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12진정0222500)	- (주)00보증보험 대표이사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7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과제빵 실기시험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11진정0699900)	- 00000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조를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에 장애상태를 확인 후, 수화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2012.8.22.	수용
7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188500)	- 00광역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00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티투어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탑승편의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8.22.	수용
77	권고 (위원회법)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이동권침해 (12진정0012500)	- 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주출입구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2.11.29.	불수용
7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12진정0782400)	- 피해자로부터 2개월 동안 징수한 총 주차비 1,100,600원중 2개월 간 월정액 주차비 300,000원을 제외한 총 800,6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환급할 것,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월정액 주차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정액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차관리직원 전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2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인 시설2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향후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2013.1.29.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7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미제공 (12진정0653600)	- 00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및00구청장에게,시각장애 인도비장애인과동등하게홈페이지를이용할수있 도록「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 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을준수하여조속히 정당한편의를제공할것과정당한편의를제공전까지 는대체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것을권고	2013.3.13.	수용
8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364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대 학교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 수하여 점자안내책자 내지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 는 안내책자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8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수화통역 미제공 등 차별 (12-진정-0643900 등 3건)	-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 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화통역 및 보조인력, 보청기 를 제공할 것과 탈의실과 샤워실 냉·온수기에 점 자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 을 권고	2013.4.3.	수용
8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56900 등 2건)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 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 수하여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와 수영장내·탈의 실내 사물함·헬스장내 운동기구·화장실 세면대 냉·온수기 등에 점자블록 설치 또는 점자스티커 부착,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 제공, 시각장애인 등이 요구 시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등 즉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8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700 등 2건)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 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 수하여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 는 안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8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3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문 화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 수하여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점자 내지 음성으 로 변환되는 안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 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8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800 등 3건)	- 00구청장과 00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지도식 안 내판, 점자블록 설치, 보조인력의 배치, 수화통역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000 등 6건)	- 00구청장과 00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발달,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 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교재 제공,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장 애인화장실에 광감지식 등의 세정장치 설치, 그 리고 샤워실에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접이식 의 자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8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800)	- 00구청장과 00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시각장애인 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0시네&000센 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등의 요구 시 문화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 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88	권고 (위원회법)	법무사 자격시험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3진정0073700)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 에 있어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 을 권고	2013.6.18.	수용
8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 및 정신과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13진정0388500)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 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 할 것, 보험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위 원회가 권고한 ‘장애인보험차별개선위원회가이 드라인’취지에 맞는 보험인수와 관련한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 00위원회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 한 피진정인에게 관련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 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할 것을 권고	2013.8.21.	수용
9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13진정01723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 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석바위사거리 및 동인 천역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 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3.11.12.	일부 수용
9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 (13진정0192700)	- 00도서관장에게, 주출입구 접근로의 안전성이 확 보되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휠체어 사용 장 애인들이 2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 할 것,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 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	2013.12.1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13진정0951100)	- 00마트점장에게, 주요 영업공간인 2~4층 매장을 휠체어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상시 개방 할 것과 휠체어 이용자는 수평보행기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엘리베이터 운행실태를 현장점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9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14진정0013000)	- 피진정인에게,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 장애인에게 적용될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당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소속 직원 및 각 영업지점의 보험모집원 모두에 대해 장애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4.11.17.	수용
9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자판기에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4진정0341500)	-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명과 가격을 점자로 제공할 것을 권고	2015.3.30	수용
9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14진정05478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 교차로에서 00교 사이의 중앙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00광역시장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5.3.30	검토 중
9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용 불허 (15진정01463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 방해와 관련하여 00장애인인권센터에서의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00구청장에게,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치·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	2015.7.23	일부 수용
9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원 수강 거부 (15진정0178400)	-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00광역시 00교육지원청장에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5.7.2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서울광장 배수구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 (13진정0917000 등 3건)	-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광장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 덮개의 틈새를 좁히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9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사 화장실 이용시 장애인 차별 (14진정09199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10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화장실 남녀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15진정02908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00시장에게, 000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이용 차별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728)	-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진정인에게 즉시 송부할 것을 권고 -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	2008.8.8.	수용
102	권고 (위원회법)	진압시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분리 (08진차0000874 등 2건)	-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09.8.31.	불수용
10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09진차0000664)	-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 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 록 조치할 것을 권고	2010.1.15.	수용
10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10진정0071400)	-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과 관련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 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10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권 침해 등 (10진정0187800 등 4건)	- 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000경비과장에 대하 여 주의조치 권고 - 00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5.4.	일부 수용
10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활동도우미 부당해고 관련 감사결과 미이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677100)	- 0000지사에게, 특별감사결과를 이행할 것과 향 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 해 관리·감독의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운영 규정(조례·규칙 포함) 등 제·개정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과 재발방지대책 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4.9.	수용
10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10진정0484500)	- 00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 사단계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2.7.4.	수용

□ 장애인 참정권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것을 권고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10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9)		2008.12.3.	수용
1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할 투표소의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1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것을 권고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1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침해 (14진정0160100 등 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가.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 나.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다.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4.4.22.	수용

□ 괴롭힘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환경 열악 등에 의한 차별 (10진정0102600)	- 피진정인에게, 횡령한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을 즉 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검찰 고발 - 0000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0000시장과 00 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시장 및 00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0.6.3.	수용
1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611700)	- 피진정인 학대혐의로 검찰 고발 - 0000복지회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 등 조치를 취 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교직원들을 대상 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1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572400)	- 000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을 권고	2010.11.15.	수용
1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시 장애인 차별 (09진차0000938)	- 000시장에게, 향후 교육 시행 시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 여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0.12.17.	수용
11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괴롭힘 (10진정0568000)	-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00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엄 중 경고조치할 것등을 권고	2011.1.6.	수용
11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노동 강요 등 (10진정0341700)	-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 검찰고발 - 00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폐 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 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6.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19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등 (10진정072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 폭행혐의로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 -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 000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피진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00재단'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2.14.	일부 수용
1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횡령 등 (11진정009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 00시장 및 00시 00청장에게, 회계업무 담당자 교체 포함하여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피진정시설을 포함하여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에게,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 각각 000씩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조치 할 것을 권고 	2011.6.7.	수용
12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11진정017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의 임금 및 재산을 횡령한 피진정인 고발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대로 사용한 60,244,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피해자의 통장, 도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1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아동시설 원장의 폭행 등 인권침해 (11진정0440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피진정인을 고발 - 00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이 폭행과 학대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00000터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 000의 00000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사회복지법인 000 및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예배 참석 및 헌금 강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11진정0306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00이사장에게 거주 생활인들의 의사에 반한 종교 활동 참석 강요, 헌금, 후원금 등의 납부 강요, 종교 활동 참석과 관련하여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식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 	2012.2.13.	수용
12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586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에게 직원인권교육수강, 법인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수립, 00구청장 및 00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12.5.25.	수용
12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노동강요 및 금전착취 (12진정0202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노동강요, 성폭행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 	2012.6.13.	수용
12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어능력인정시 험 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12진정0519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에게, 국어능력인증시험시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안전행정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어능력시험, TOEIC 장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 연장 등 필요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12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13진정0177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피진정인 1을 징계할 것, 피진정인 2를 주의 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13.9.24.	수용
12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13진정074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피진정인 1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사회복지법인 0000 대표이사에게,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3.11.12.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29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감금과 강박 (13진정0733200)	- 피진정인에게, 간병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의 신체 를 억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종사자들 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 억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4.7.7.	수용
130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보호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14진정0271500 등 2건)	- 검찰총장에게, 00원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00요양 원에서 발생한 골절사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 조의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가. 00원과 00원요양원의 「장애인복 지법」 제59조의7, 제60조의4규정에 반하여 거주인 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태한 행위와 거주인간의 성 추행에 대한 부주의한 행위, 00요양원의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의 간호사배치 등의 시설인력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모·부성권 보호와 성적 자 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 다. 거주인들의 권리 침해나 제약,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거주인 개인별 심층면담을 실 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13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급 실무보조원의 장애아동 비하 발언 등 (13진정0841400)	-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00광역 시 00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과 해당학교 교직 원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 교육을 실시 할 것과,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피진 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6.30	수용
13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15진정06104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도록 0000주간보호센터를 운영 하고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체험홈의 자립생활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결정 을 배제하고 피해자를 비하·모욕한 것과 관련하 여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 과 00시장에게, 피진정인과 진정의 직원들이 부정 한 방법으로 활동보조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행정조치 할 것을, 00시장에게, 0000주간보호센터 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을 권고	2015.11.19	검토 중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부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9.] [법률 제12365호, 2014.1.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건”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

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

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 2016.8.4.] 제3조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8.4.] 제11조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들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2.3.〉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

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
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
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8.4.] 제14조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
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
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

- 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시행일 : 2016.8.4.] 제20조

-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

[제목개정 2010.5.11.]

-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6.2.3.>
-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

[제목개정 2010.5.11.]

[시행일 : 2016.8.4.] 제21조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 ③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점자·음성 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6.2.3.>

[시행일 : 2016.8.4.] 제23조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

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

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

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 <2010.5.11.>

④ 삭제 <2010.5.11.>

⑤ 삭제 <2010.5.11.>

부칙 <제12365호, 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 인 쇄 | 2016년 4월

| 발 행 | 2016년 4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967 | F A X | (02) 2125-0924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494-9 9333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